

한 눈에 보는 2019 장애인통계

CONTENTS

I. 등록장애인 현황

1. 등록장애인 추이	04
2. 등록장애인 세부현황	05
3. 등록장애인 구성의 특징	07

II.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1. 장애인 경제활동지표 총괄	08
2. 장애인 경제활동지표 세부 현황	09
3. 주요 대상별 경제활동지표	10
4.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구성	12
5.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이동 현황(2017 → 2018)	14
6. 장애인 취업자의 주요 특성	14
7.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주요 특성	16
8. 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18
9. 장애인 비임금근로자의 주요 특성	19
10.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의 주요 특성	20
11. 장애인 고용보조지표	21

III. 기업체 장애인고용현황

1.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고용 총괄(2017년 말 기준)	22
2. 장애인 고용기업체 및 장애인 상시근로자 세부 현황(2017년 말 기준)	23
3. 장애인 채용 이유 및 채용하지 못한 이유(2017)	24
4. 장애인 고용 시 도움정도	24

IV.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1. 장애인 의무고용 총괄(2018)	25
2. 의무고용 이행률 및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2018)	26

V. 고용서비스 경험 및 욕구

1. 장애인의 고용서비스 욕구(2018)	27
2. 기업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욕구(2017)	28

VI. 영역별 장애인복지 현황

1. 장애인의 경제생활	29
2. 장애인의 보건의료	31
3. 장애인의 교육	33
4. 장애인의 생활 및 여가	35
5. 장애인의 차별 경험과 인식	35
6.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욕구	36

VII. 해외 장애인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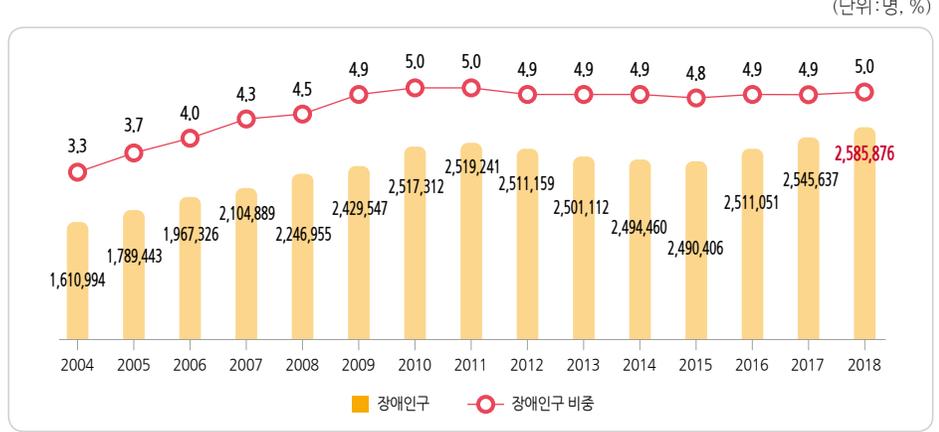
1. 해외 주요국 장애인 관련 현황	37
2. 일본의 장애인 통계	40
3. 독일의 장애인 통계	41
4. 미국의 장애인 통계	42

*주요 용어 해설	43
-----------	----

*장애인 고용통계 3종 소개	47
-----------------	----

I. 등록장애인 현황

1. 등록장애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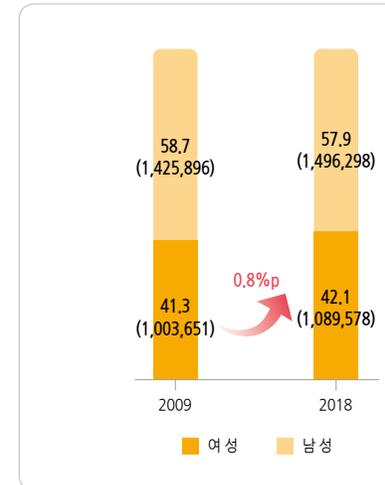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인구 (명, %)	장애인	2,501,112	2,494,460	2,490,406	2,511,051	2,545,637	2,585,876	
	전체인	51,141,463	51,327,916	51,529,338	51,696,216	51,778,544	51,826,059	
	비율	4.9	4.9	4.8	4.9	4.9	5.0	
증가율 (%)	장애인	-0.4	-0.3	-0.2	0.8	1.4	1.6	
	전체인	0.4	0.4	0.4	0.3	0.2	0.1	
장애 유형 비율 (%명)	지체	52.3	51.9	51.5	50.5	49.3	47.9	1,238,532
	뇌병변	10.1	10.1	10.1	10.0	9.9	9.8	253,083
	시각	10.1	10.1	10.2	10.1	9.9	9.8	252,957
	청각	10.2	10.1	10.1	10.8	11.9	13.2	342,582
	언어	0.7	0.7	0.8	0.8	0.8	0.8	20,744
	지적	7.2	7.4	7.6	7.8	7.9	8.0	206,917
	자폐성	0.7	0.8	0.8	0.9	1.0	1.0	26,703
	정신	3.8	3.9	4.0	4.0	4.0	3.9	102,140
	신장	2.7	2.8	3.0	3.1	3.3	3.4	87,892
	심장	0.3	0.3	0.2	0.2	0.2	0.2	5,304
	호흡기	0.5	0.5	0.5	0.5	0.5	0.5	11,761
	간	0.4	0.4	0.4	0.4	0.5	0.5	12,524
	안면	0.1	0.1	0.1	0.1	0.1	0.1	2,689
	장루·요루	0.5	0.6	0.6	0.6	0.6	0.6	15,027
	뇌전증	0.3	0.3	0.3	0.3	0.3	0.3	7,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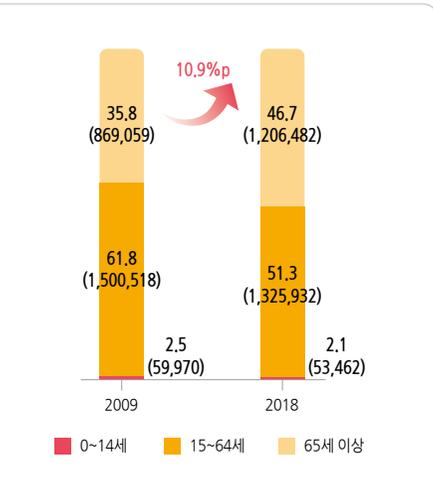
· 주 1: 장애인구 비율 = (등록장애인 수/주민등록인구 수) X 100
 2: 증가율 = 전년 대비 증가율
 3: 장애유형 용어변경 : 정신지체 → 지적장애(2008.2), 발달장애 → 자폐성장애(2008.2), 간질장애 → 뇌전증장애(2014.7)
 · 자료: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각 연도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각 연도

2. 등록장애인 세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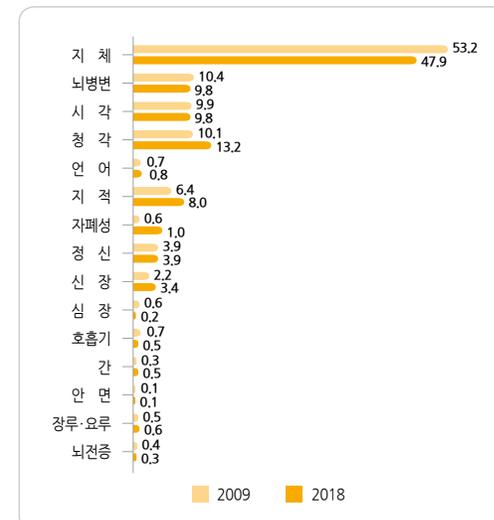
● 성별 구성(% , 명) 2009,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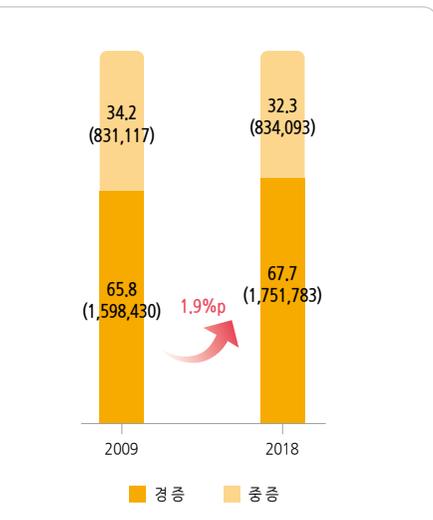
● 연령대별 구성(% , 명) 2009, 2018



● 장애유형별 구성(%) 2009,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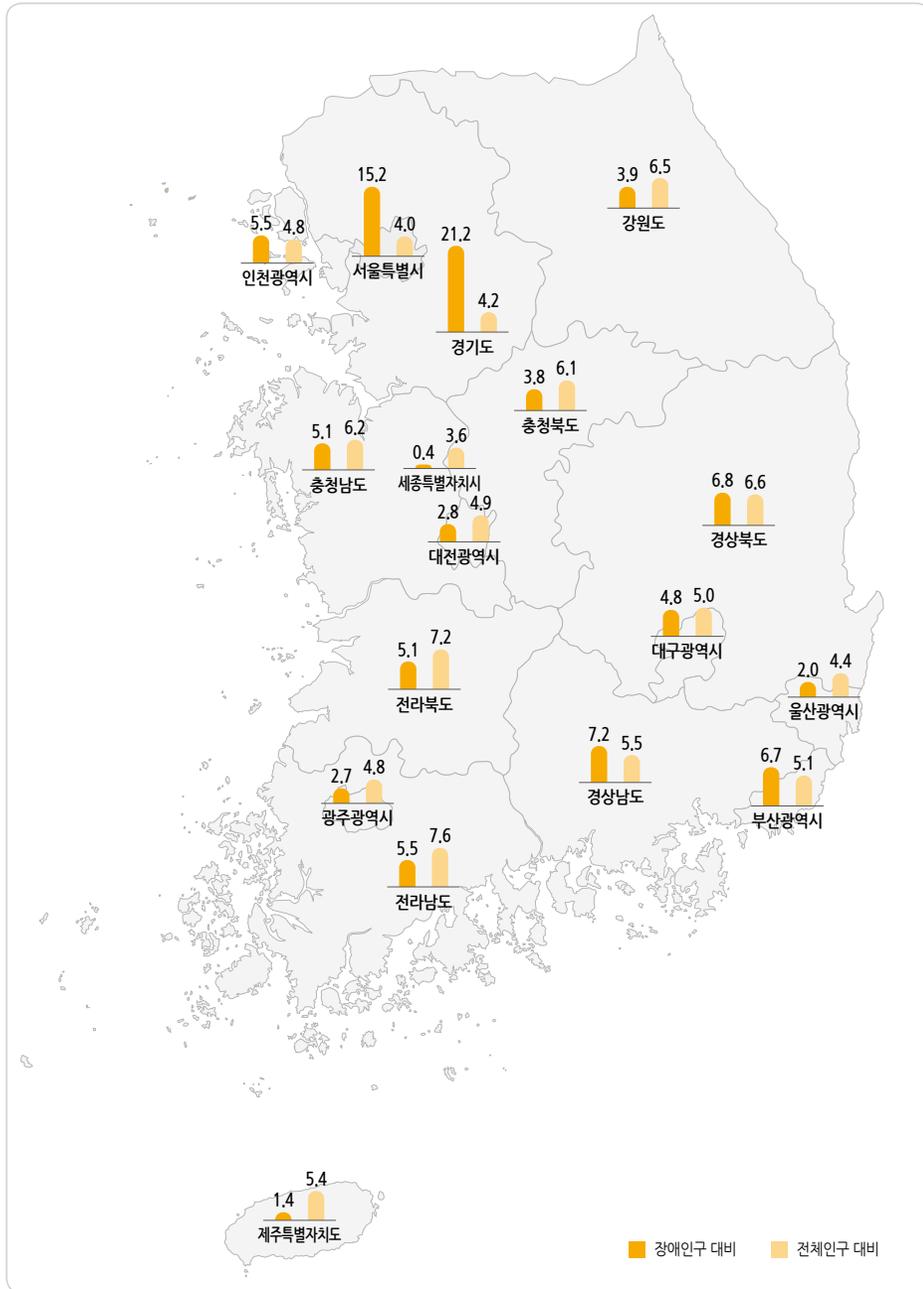


● 장애정도별 구성(% , 명) 2009, 2018



· 주 1: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조의 기준을 따른 것으로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일부 장애 유형의 경우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포함함(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장애와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2018년 지체 3급 장애인의 경우 2018년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명부의 장애부위 정보를 활용하여 산출한 지체 3급 상지부위 장애 비율 36.7%를 적용한 추정치임
 · 자료: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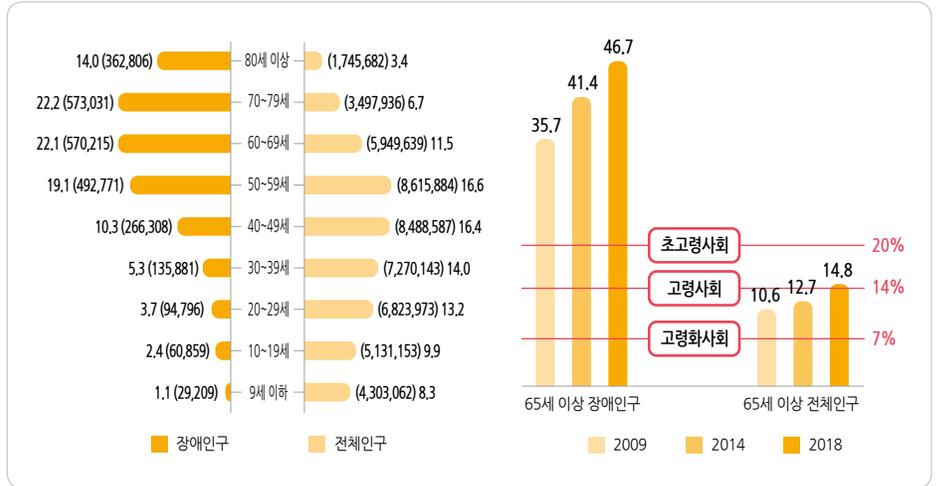
● 지역별 비율(%) 2018



· 주 1 : 장애인구 대비 = (시도별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X 100
 2 : 전체인구 대비 = (시도별 장애인구 / 시도별 전체인구) X 100
 ·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2018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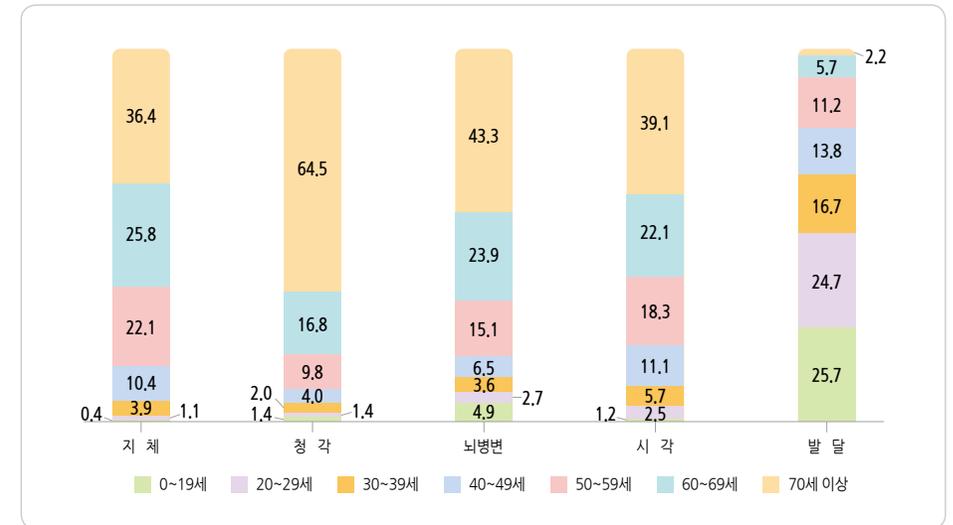
3. 등록장애인 구성의 특징

● 연령대 비율(%, 명) 2018



· 주 : 65세 이상 인구 비율 = (65세 이상 인구 / 전체 인구) X 100
 ·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각 연도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각 연도

● 장애유형별 연령대 비율(%) 2018



· 주 1 : '장애유형별'에서는 비율이 높은 상위 5개만 비교. 단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합친 것임
 2 : 장애유형별 연령대 비율 = (장애유형별 해당 연령대 인구 / 장애유형별 전체인구) X 100
 ·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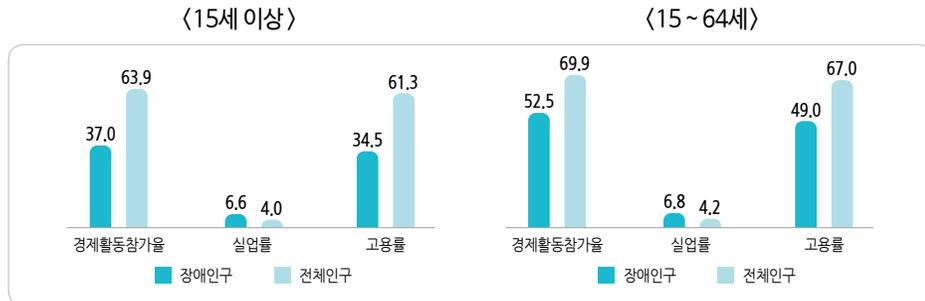
II.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1. 장애인 경제활동지표 총괄

〈15세 이상〉 (단위: 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장애인구	2016년	2,441,166	941,051	880,090	60,961	1,500,115	38.5	6.5	36.1
	2017년	2,460,080	958,008	898,475	54,533	1,507,072	38.7	5.7	36.5
	2018년	2,495,043	922,897	861,648	61,249	1,572,146	37.0	6.6	34.5
전체인구	2016년	43,387,000	27,455,000	26,450,000	1,005,000	15,932,000	63.3	3.7	61.0
	2017년	43,735,000	27,828,000	26,824,000	1,003,000	15,907,000	63.6	3.6	61.3
	2018년	44,141,000	28,184,000	27,064,000	1,121,000	15,956,000	63.9	4.0	61.3

〈15~64세〉 (단위: 명, %)									
구 분	15세~64세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장애인구	2016년	1,355,493	728,764	680,163	48,601	626,729	53.8	6.7	50.2
	2017년	1,382,558	721,961	680,170	41,791	660,597	52.2	5.8	49.2
	2018년	1,312,159	689,308	642,738	46,570	622,851	52.5	6.8	49.0
전체인구	2016년	36,492,000	25,167,000	24,198,000	969,000	11,325,000	69.0	3.8	66.3
	2017년	36,560,000	25,443,000	24,485,000	958,000	11,116,000	69.6	3.8	67.0
	2018년	36,793,000	25,711,000	24,633,000	1,078,000	11,082,000	69.9	4.2	67.0

● 장애인구와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상태 비교 (%) 2018



· 주 1: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으로 '15세 이상 인구'와 '15~64세 인구' 두 가지가 사용되며, 후자는 OECD의 기준으로 국가 간 비교 시 자주 사용됨

2: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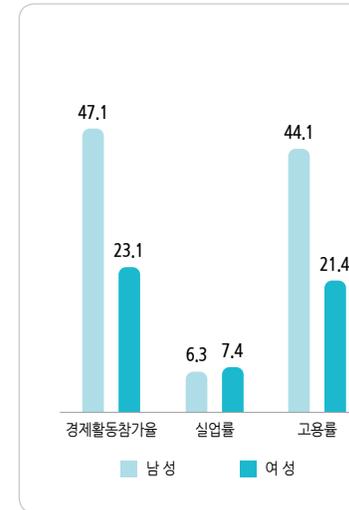
실업률 = (실업자수 / 경제활동인구) × 100

고용률 = (취업자수 / 15세 이상 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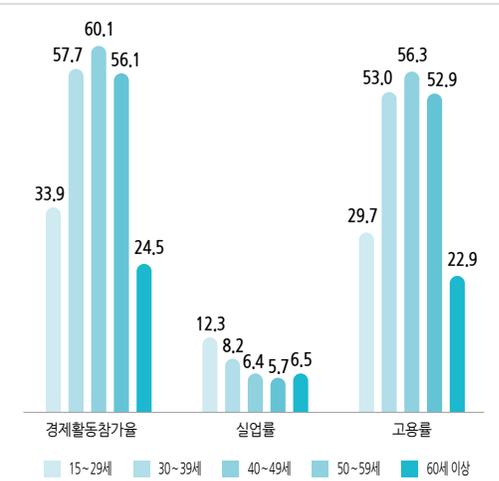
·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각 연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2. 장애인 경제활동지표 세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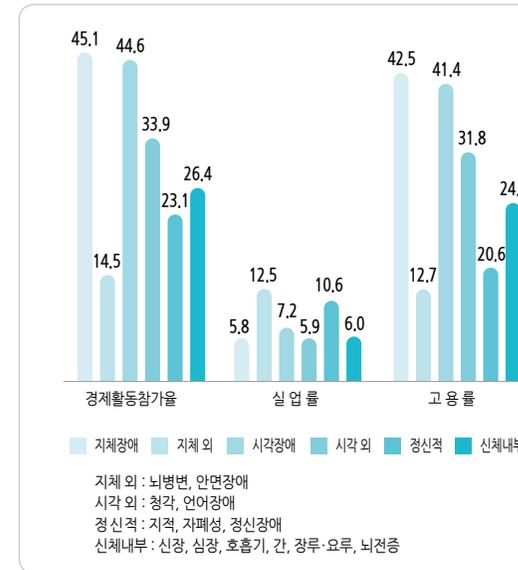
● 성별 현황 (%) 15세 이상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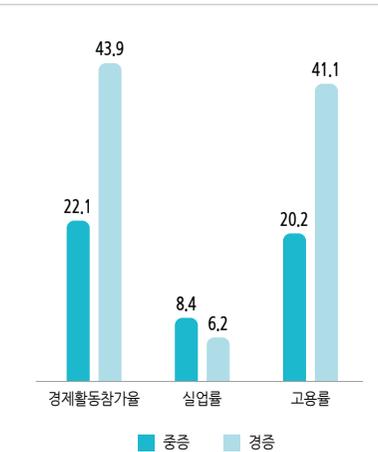
● 연령대별 현황 (%) 15세 이상 2018



● 장애유형별 현황 (%) 15세 이상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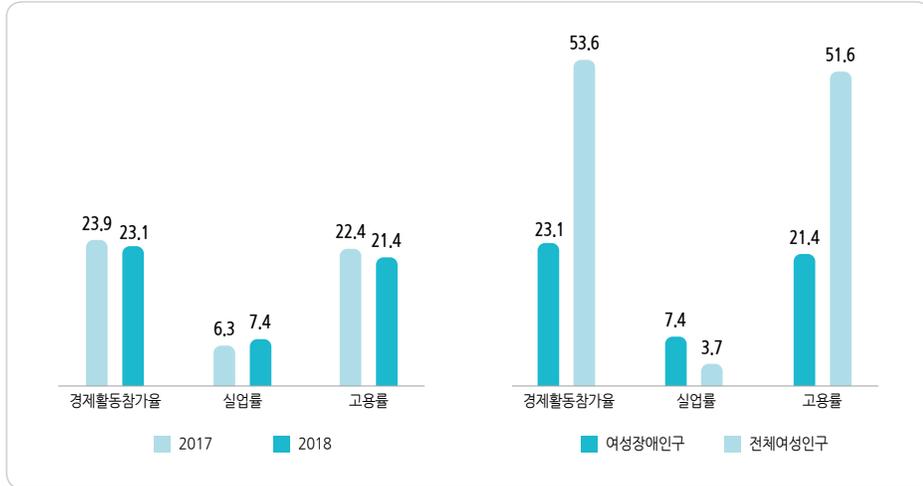
● 장애정도별 현황 (%) 15세 이상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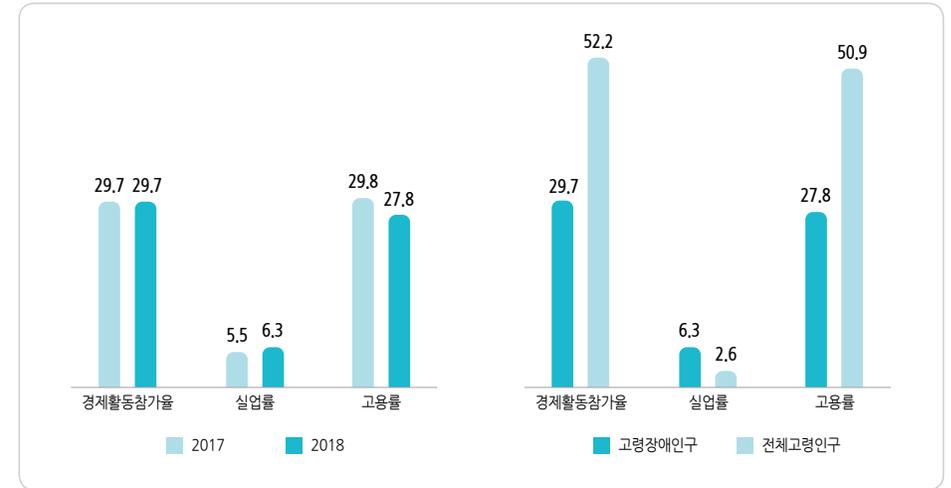
·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18

3. 주요 대상별 경제활동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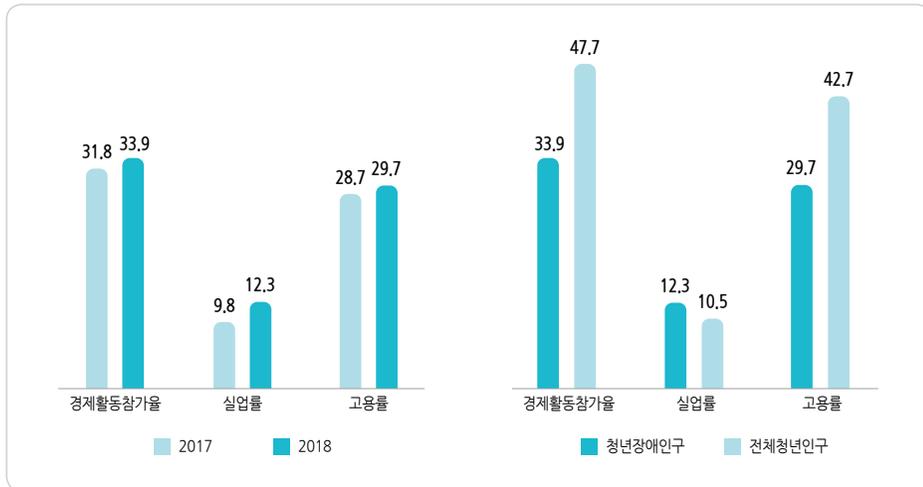
● 여성장애인구 지표 변화(%)(15세 이상 2017, 2018) ● 전체 여성인구 지표 비교(%)(15세 이상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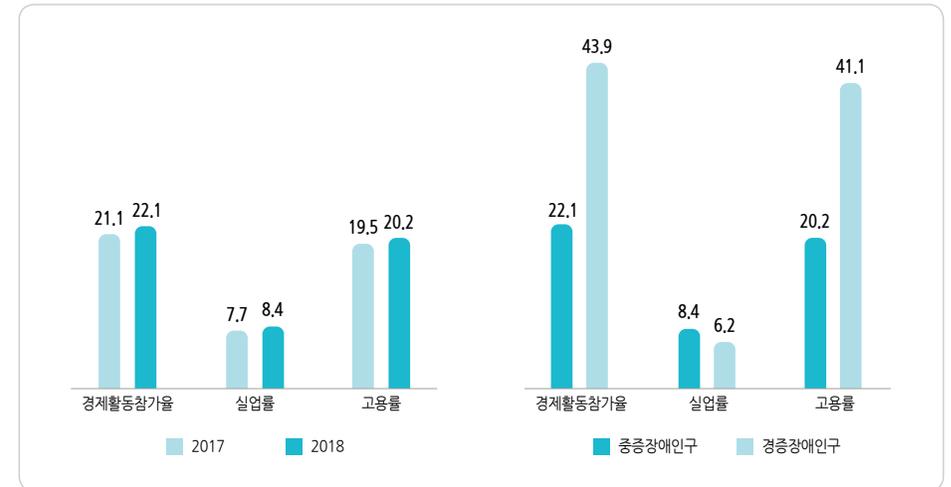
● 고령장애인구 지표 변화(%)(15세 이상 2017, 2018) ● 전체 고령인구 지표 비교(%)(15세 이상 2018)



● 청년장애인구 지표 변화(%)(15~29세 2017, 2018) ● 전체 청년인구 지표 비교(%)(15~29세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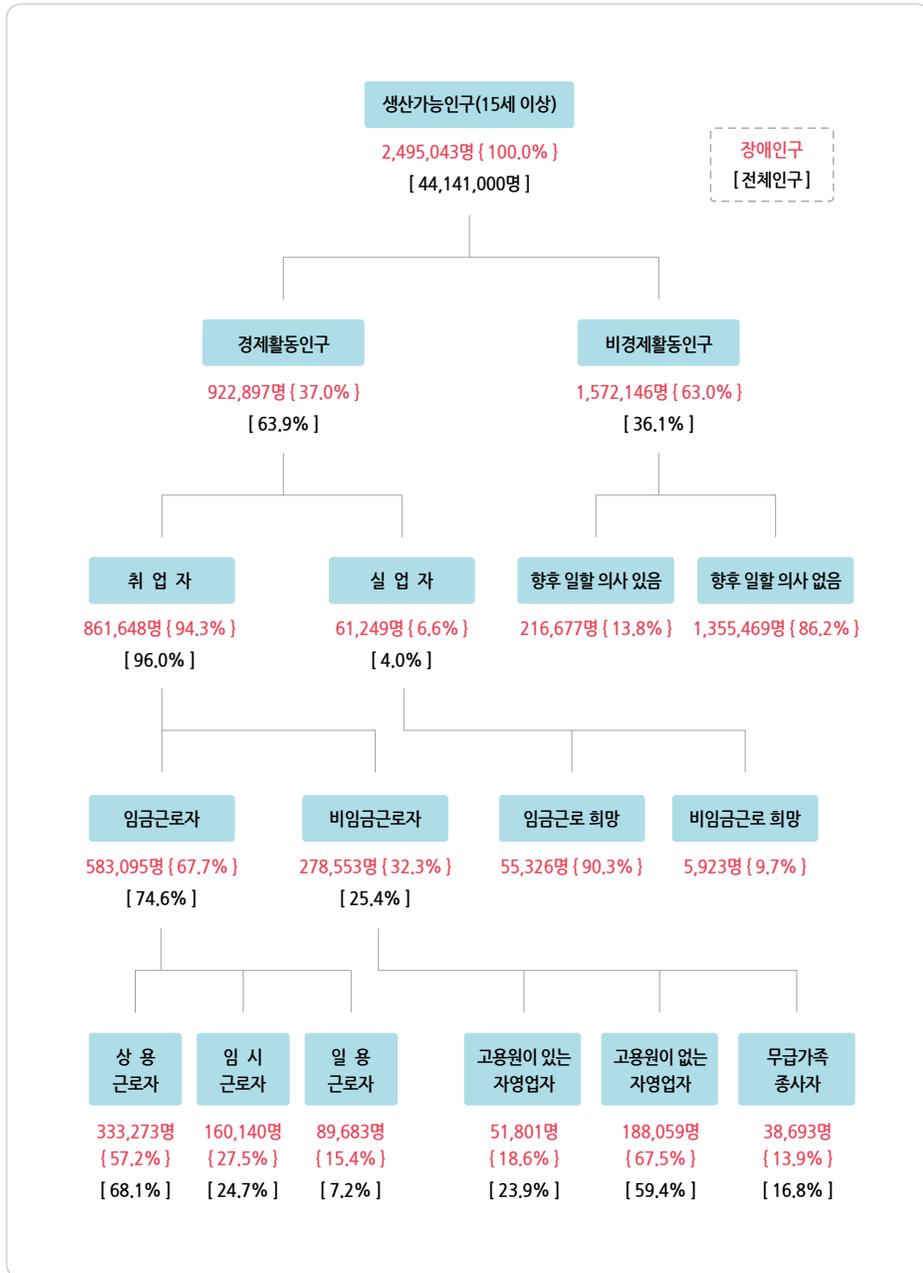
● 중증장애인구 지표 변화(%)(15세 이상 2017, 2018) ● 중경중증장애인구 지표 비교(%)(15세 이상 2018)



· 주 1 : 대상별 전체인구에는 대상별 장애인구를 포함함
 2 : 여성장애인 및 중증·경증장애인은 15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각 연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년 5월)」,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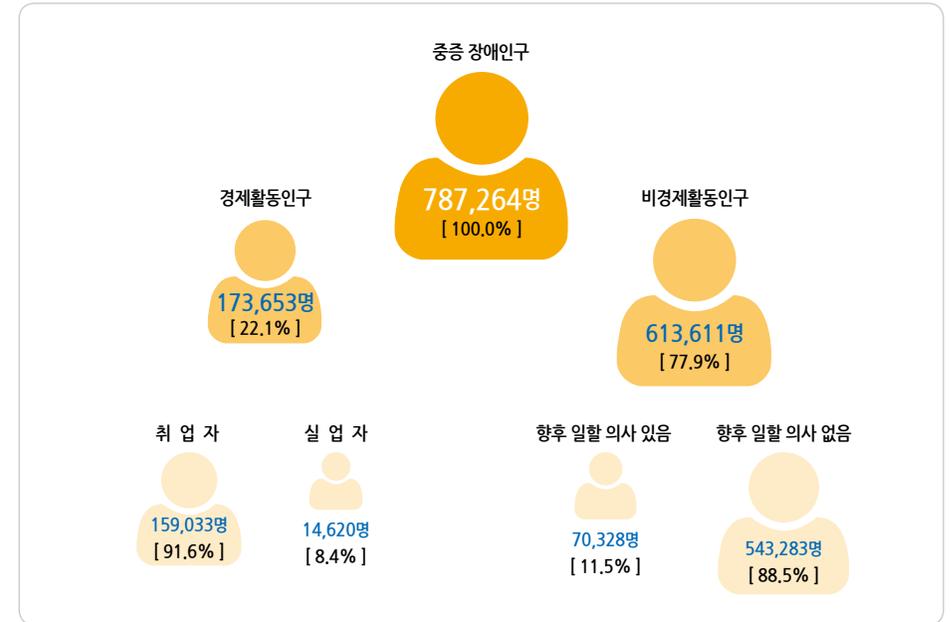
4.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구성

●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구성 (15세 이상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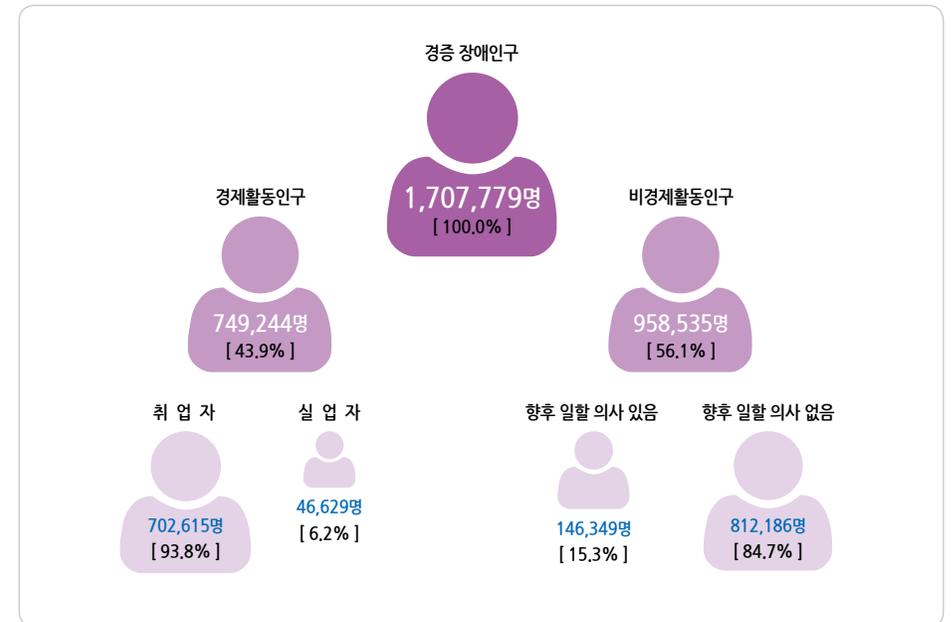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18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년 5월)」, 2018

● 중증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구성 (15세 이상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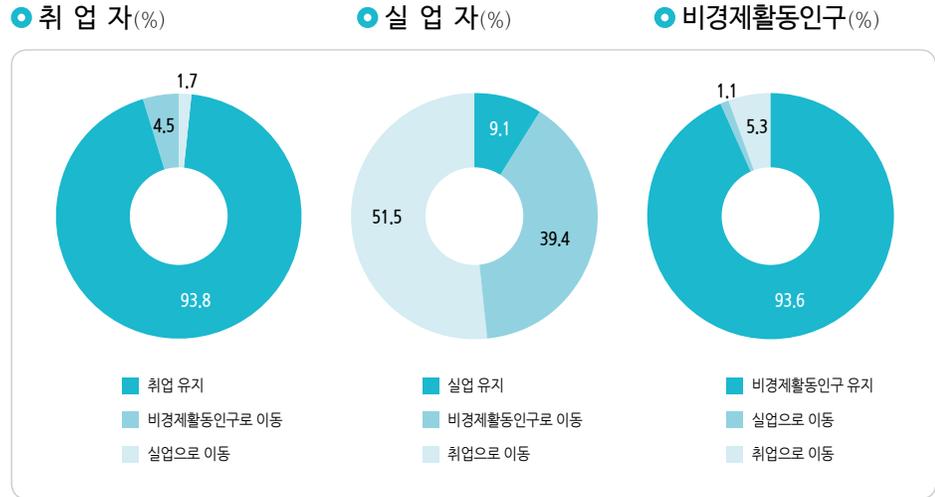


● 경증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구성 (15세 이상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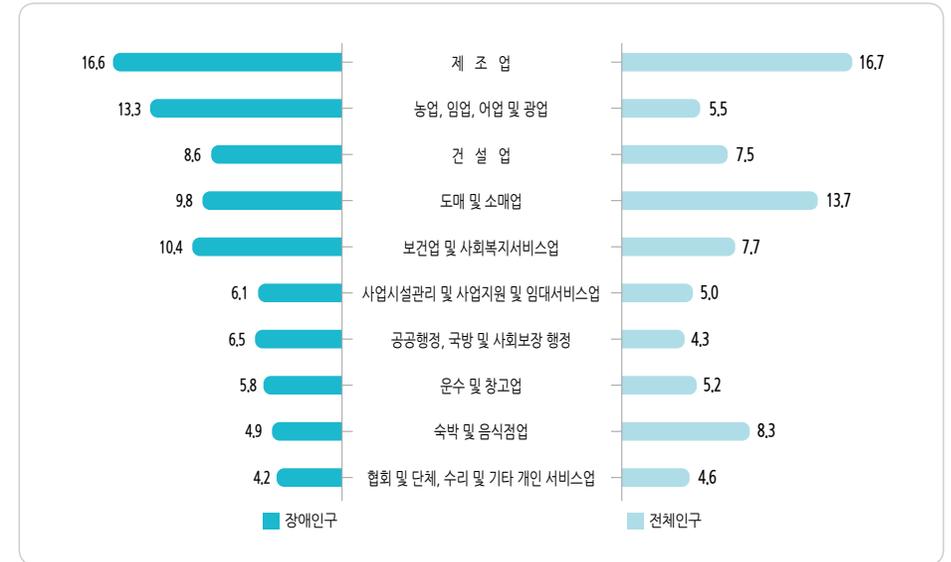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18

5.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이동 현황(2017 → 2018)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2차웨이브 3차조사)」,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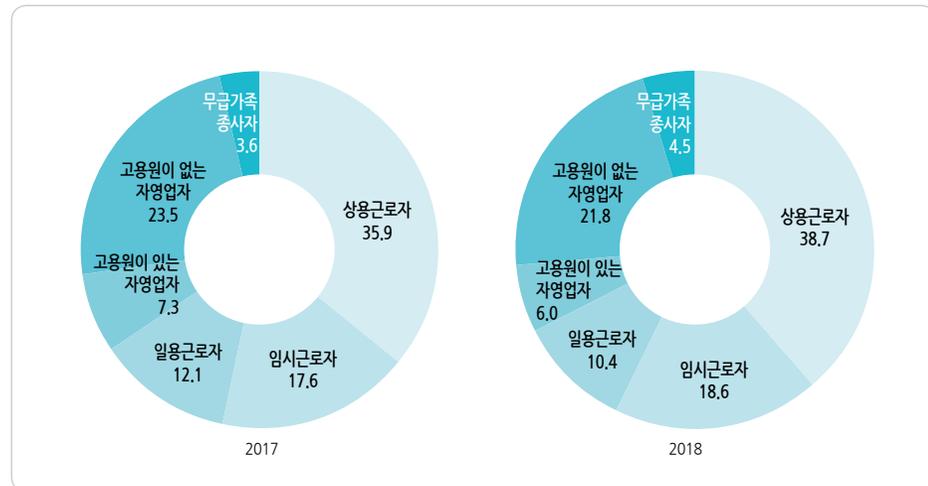
○ 취업자의 직장(일자리) 산업 (%) 15세 이상 2018



· 주 : 취업자의 직장(일자리) 산업은 응답이 많은 주요 항목만 제시

6. 장애인 취업자의 주요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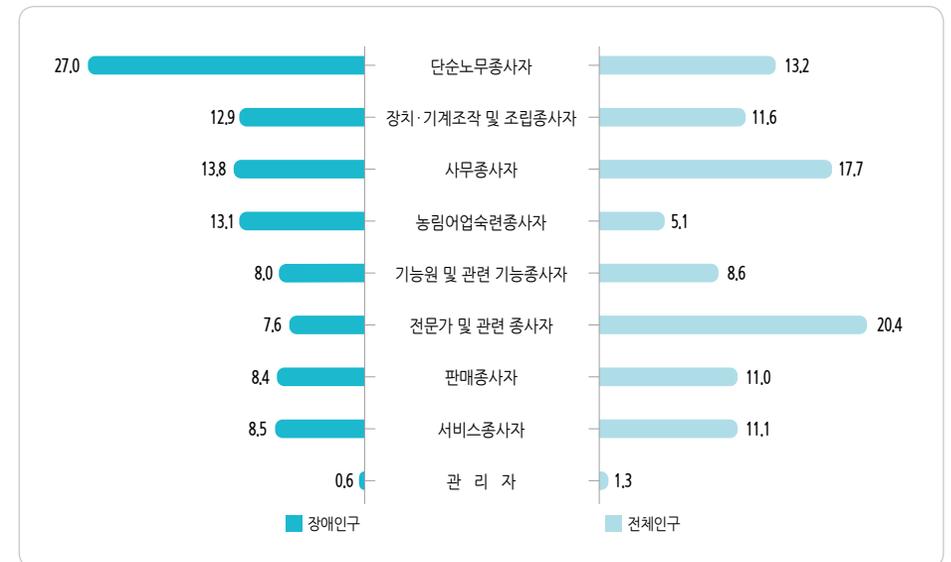
○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 15세 이상 2017, 2018



· 주 :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와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 (이하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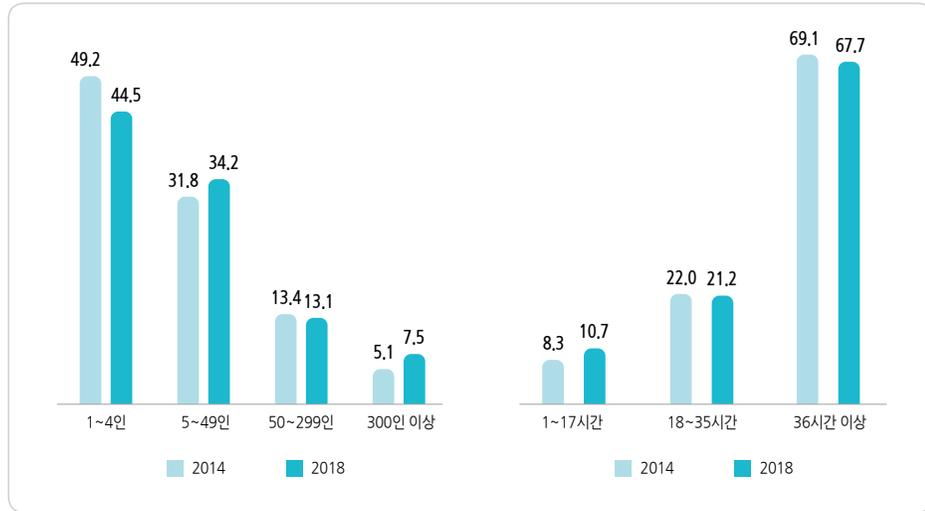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각 연도

○ 취업자의 직업 (%) 15세 이상 2018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18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년 5월)」,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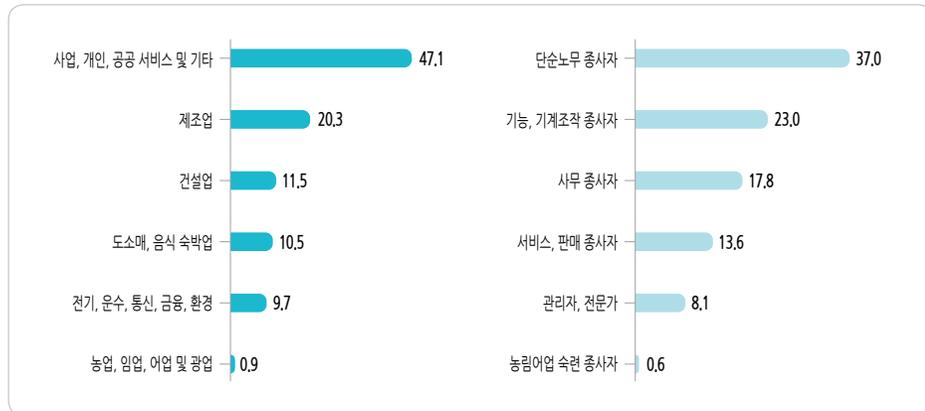
● 취업자의 사업체 규모 변화(%) 15세 이상 2014, 2018 ● 취업자의 주당 취업시간 변화(%) 15세 이상 2014, 2018



· 주 : '사업체'는 기업체의 하부조직으로 분사·지점·공장·영업소·상점 등을 의미함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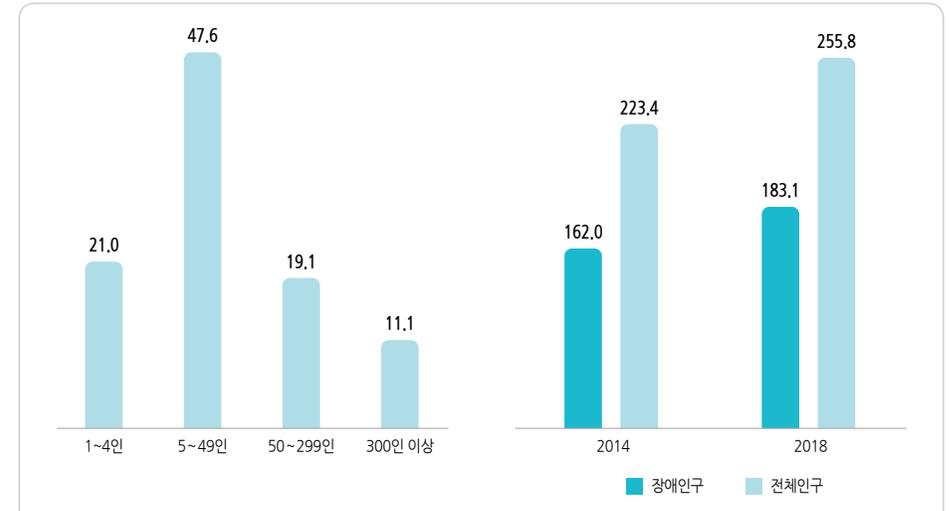
7.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주요 특성

● 임금근로자의 직장(일자리) 산업(%) 15세 이상 2018 ● 임금근로자의 직업(%) 15세 이상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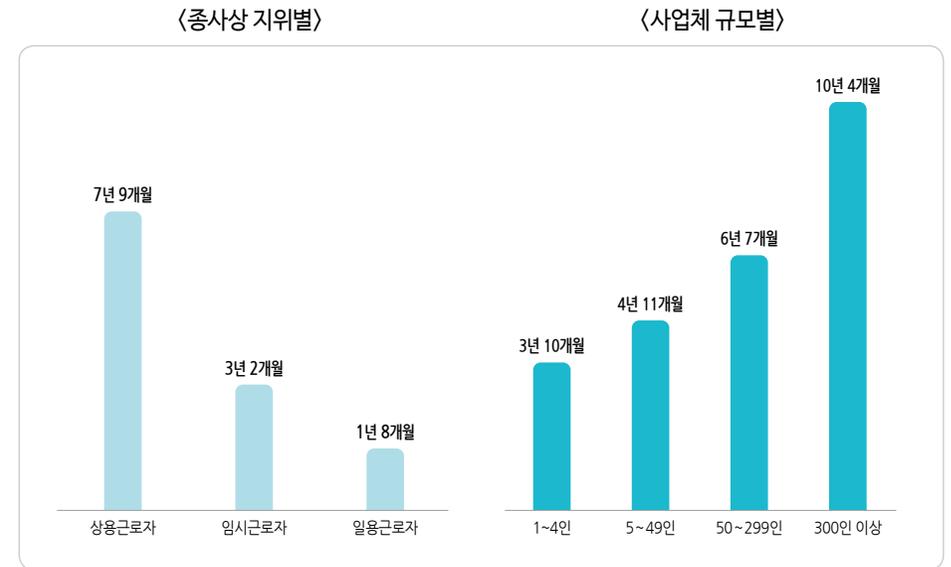
· 주 1 :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 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 운수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2 : "관리자, 전문가" = 관리자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기능, 기계조작 종사자" =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 장차,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18

●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규모(%) 15세 이상 2018 ●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만원) 15세 이상 2014,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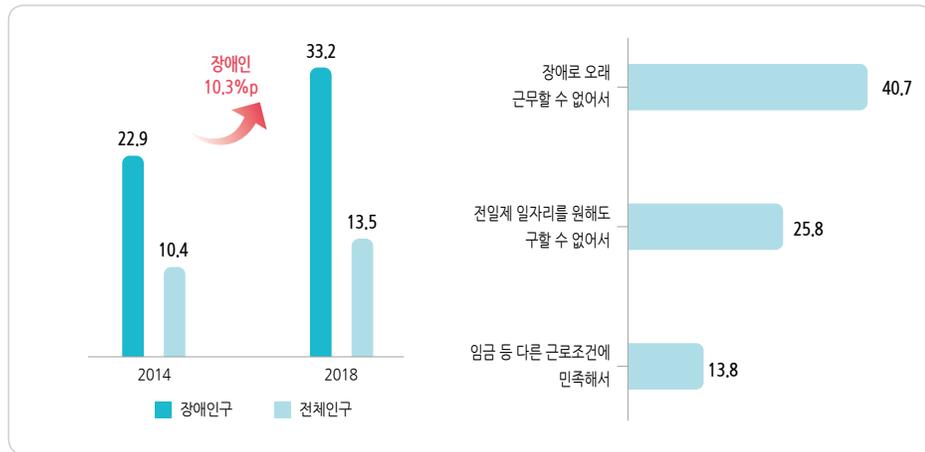
· 주 : 모름/응답거절 제외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각 연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연도

● 임금근로자 직장 근속기간(%) 15세 이상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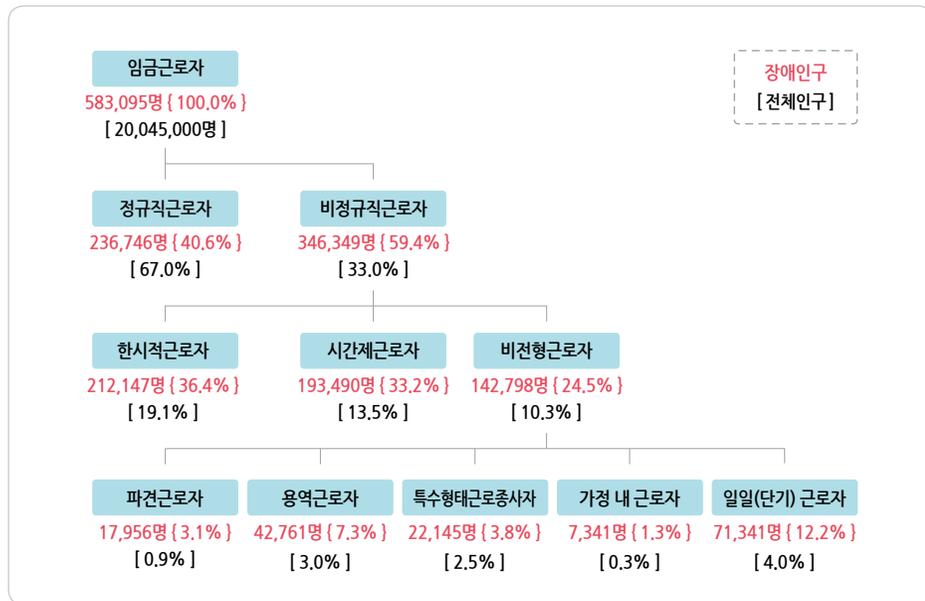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18

● 임금근로자의 시간제 근로 비율 (%) 15세 이상 2014, 2018 ● 임금근로자의 시간제 근로 사유 (%) 15세 이상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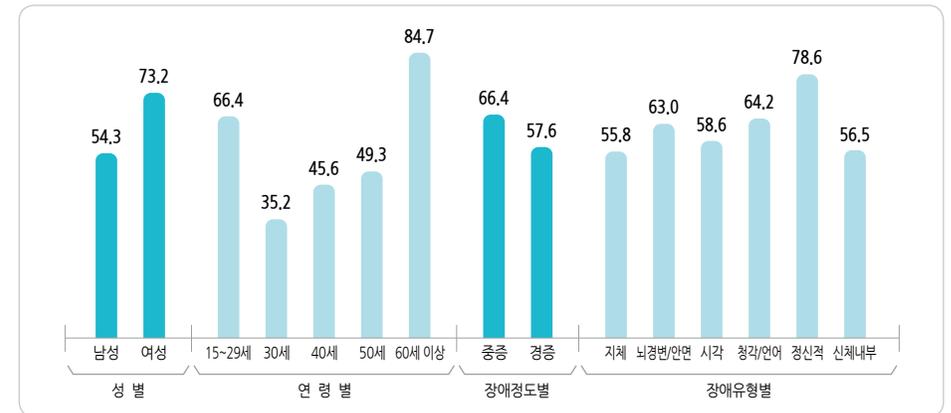
· 주 1 : 시간제 근로는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 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미만 일하기로 정한 경우
 2 : '시간제 근로사유'는 응답이 많은 주요 항목만 제시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각 연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8. 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2018
(15세 이상)



· 주 : 유형별 중복으로 유형별 규모와 비정규직 전체 비율의 합계는 불일치함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18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8년 8월)」,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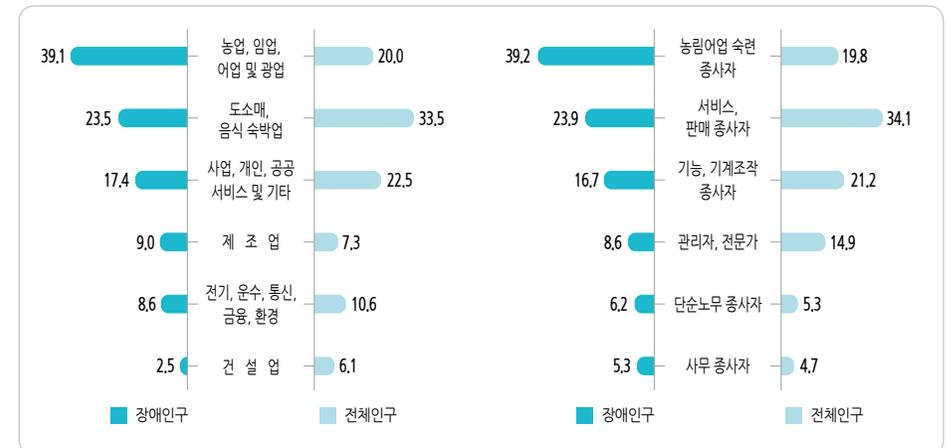
●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 인구통계학 변수별 (%) 15세 이상 2018



· 주 1 :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2 :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신체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장애를 의미함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18

9. 장애인 비임금근로자의 주요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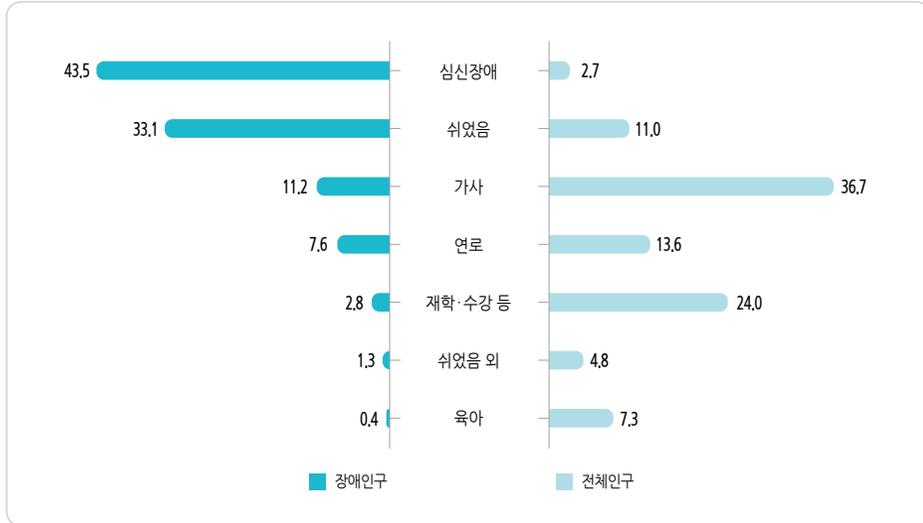
● 비임금근로자의 직장(일자리) 산업 (%) 15세 이상 2018 ● 비임금근로자의 직업 (%) 15세 이상 2018



· 주 1 :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 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 운수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2 : "관리자, 전문가" = 관리자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기능, 기계조작 종사자" =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18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년 8월)」,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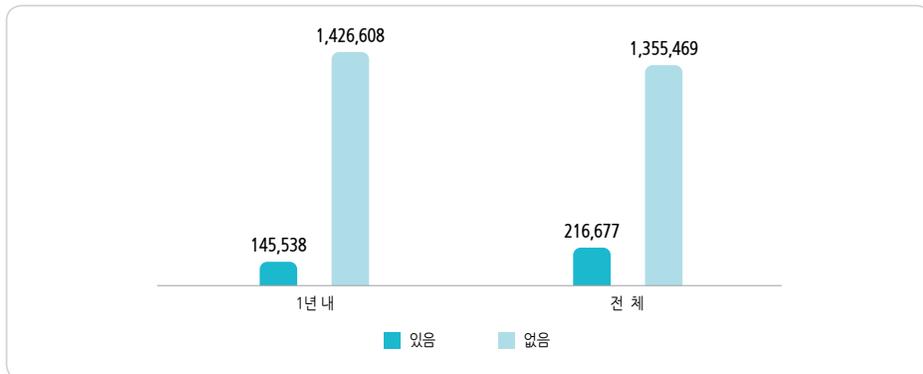
10.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의 주요 특성

● 비경제활동인구의 지난 주 주된 활동 상태 (%) 15세 이상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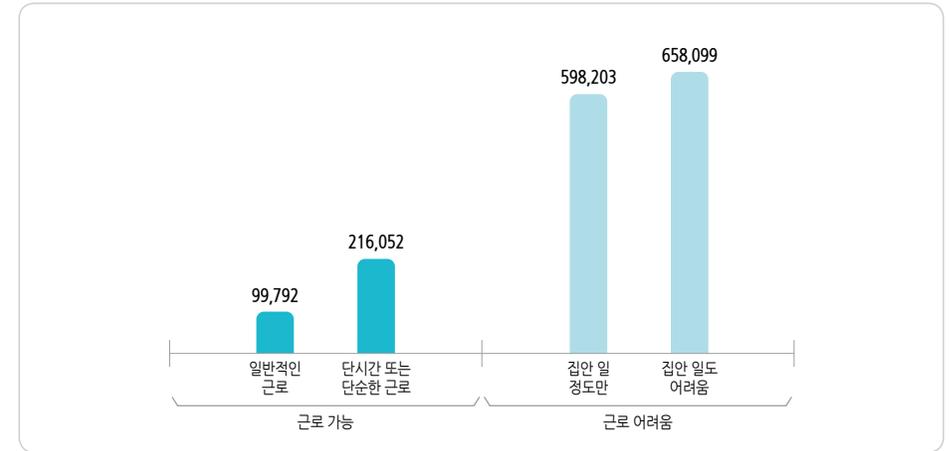
- 주 : "재학·수강 등" = 정규교육기관 통학(재학) + 입시학원 통학(수강) +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수강) 등
"기타" = 학원·기관 통학(수강)외 취업준비 + 진학준비 + 군입대 대기 + 결혼준비 + 쉬었음 등
"취업준비" =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수강) + 학원·기관 수강 외 취업 준비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18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년 5월)」, 2018

● 비경제활동인구의 일할 의사(명) 15세 이상 2018



- 주 : '전체 일할 의사'는 '1년 내 일할 의사'와 '1년 내는 아니더라도 향후 언젠가 일할 의사'의 합계임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18

● 비경제활동인구의 주관적 근로 가능정도(명) 15세 이상 2018



- 주 : '근로 가능 정도'는 일자리 희망여부와 상관없이 본인판단에 따른 주관적 근로능력임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18

11. 장애인 고용보조지표

● 고용보조지표(%, 명) 15세 이상

구분	연도	고용보조지표 1		고용보조지표 2			고용보조지표 3	
		시간관련추가 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장애 인구	2018년	12.6	55,226	14.2	81,502	6,898	74,604	19.7
	2017년	12.1	61,044	13.3	83,007	7,707	75,300	19.2
전체 인구	2018년	6.3	656,000	9.3	1,646,000	54,000	1,593,000	11.5
	2017년	5.7	579,000	9.1	1,669,000	59,000	1,610,000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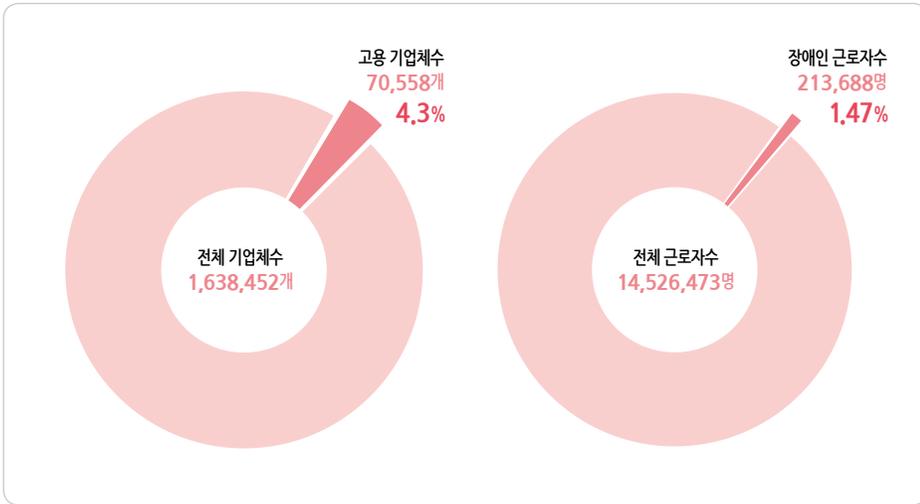
- 주 1 : 고용보조지표란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의 크기'를 의미하며 잠재적 실업자를 고려한 실업률의 개념임 ('주요 용어 해설' 참조)
- 2 : 고용보조지표 1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X 100
고용보조지표 2 =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X 100
고용보조지표 3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X 100
- 3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① : 취업자 중에서 실제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한 자
잠재경제활동인구 ② :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의 합계
- 잠재취업가능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
- 잠재구직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18

Ⅲ. 기업체장애인고용 현황

1.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고용 총괄(2017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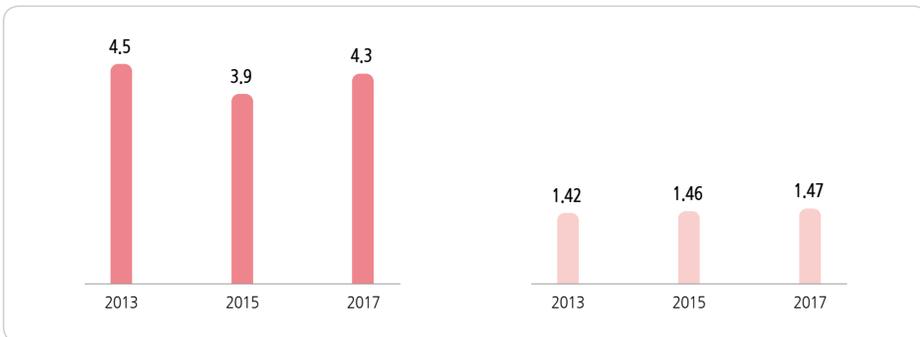
○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

○ 장애인 상시근로자 현황



○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 추이 (%)

○ 장애인근로자 비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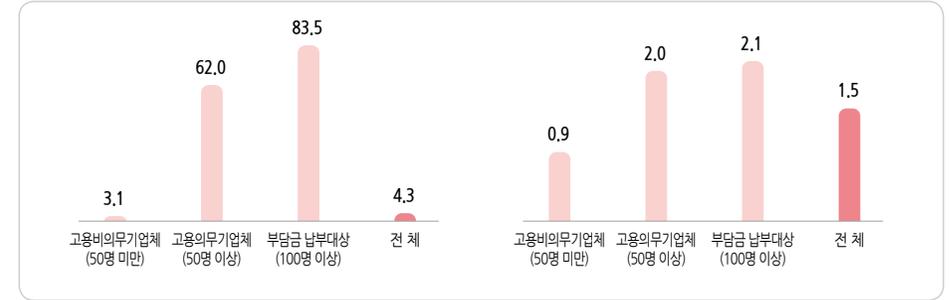
· 주 1 :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 = (장애인고용기업체 수/전체기업체 수) X 100
 2 : 장애인근로자 비율 = (장애인근로자 수 / 전체상시근로자 수) X 100
 3 : 상시근로자는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동시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함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각 연도

2. 장애인 고용기업체 및 장애인 상시근로자 세부 현황(2017년 말 기준)

○ 고용의무 및 부담금 대상 업체 고용 현황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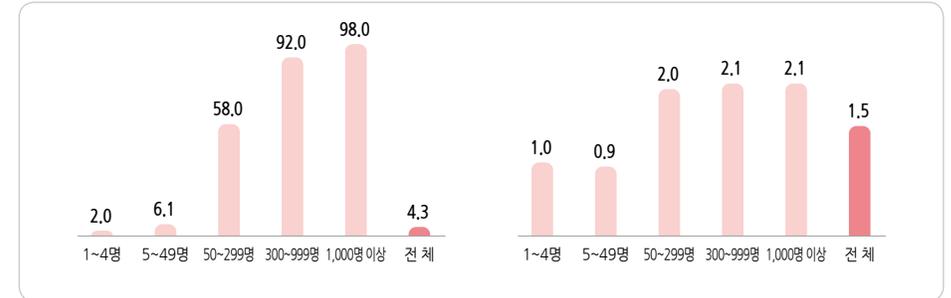
〈장애인 상시근로자 고용률 (%)〉



○ 기업체 규모별 고용 현황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 (%)〉

〈장애인 상시근로자 고용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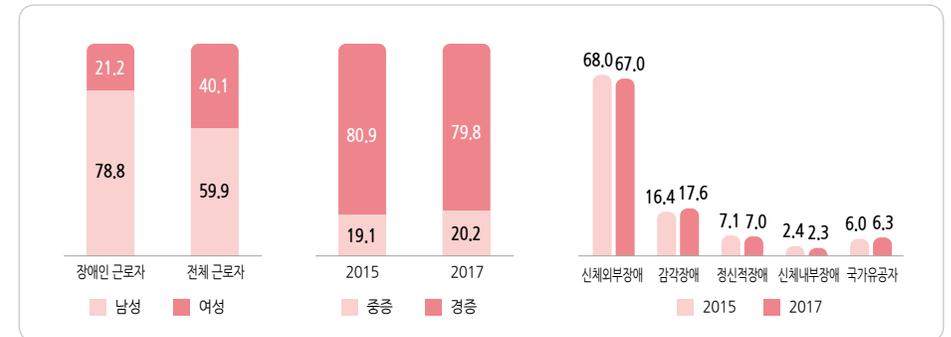


○ 장애인 상시근로자 세부 특성

〈성별 (%) 2017〉

〈장애정도별 고용 추이 (%) 2015, 2017〉

〈장애유형별 고용 추이 (%) 2015,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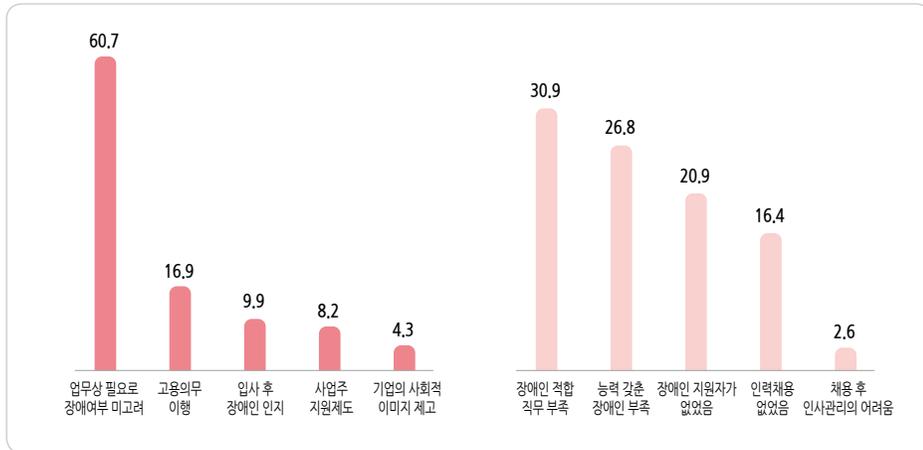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각 연도

3. 장애인 채용 이유 및 채용하지 못한 이유(2017)

● 장애인 근로자 채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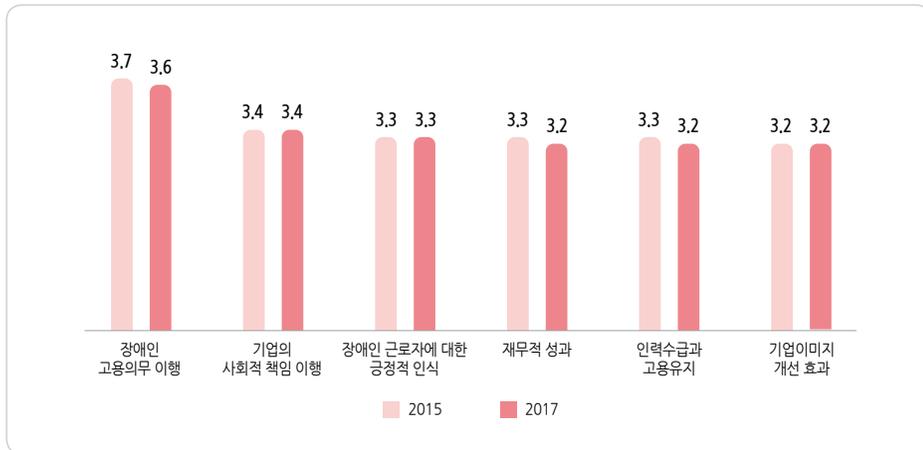
● 장애인 근로자 채용하지 못한 이유(%)



- 주 1: '채용이유'는 5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 대상으로 조사
- 주 2: '채용하지 못한 이유'는 5인 이상 장애인 미고용기업체 중 고용 의사는 있으나 채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기업체 대상으로 조사
- 주 3: 응답이 많은 주요 항목만 제시
-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2018

4. 장애인 고용 시 도움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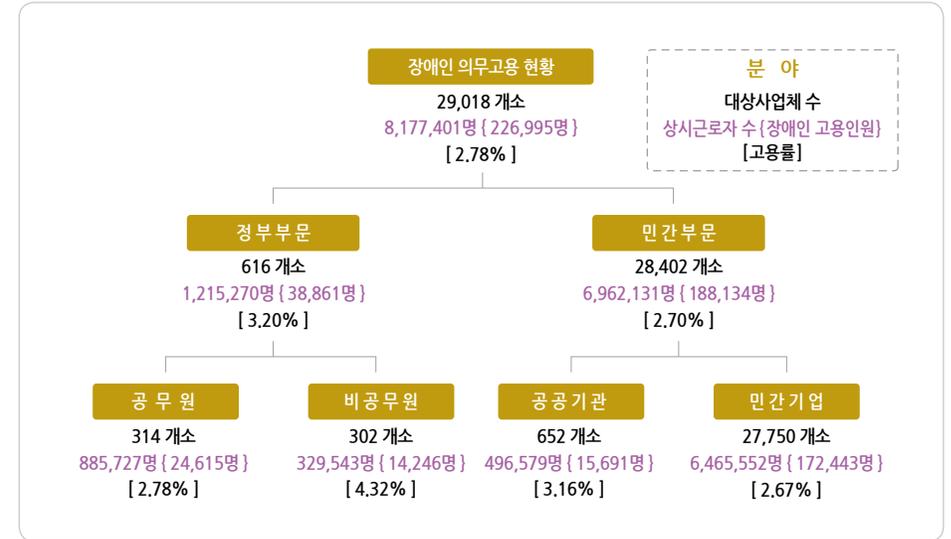
●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도움 정도(5점 척도) 2015, 2017



- 주 1: 5점 척도 기준(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 주 2: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과 '재무적 성과'의 항목은 보기의 '해당 없음'을 제외하고 분석
-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각 연도

IV.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1. 장애인 의무고용 총괄(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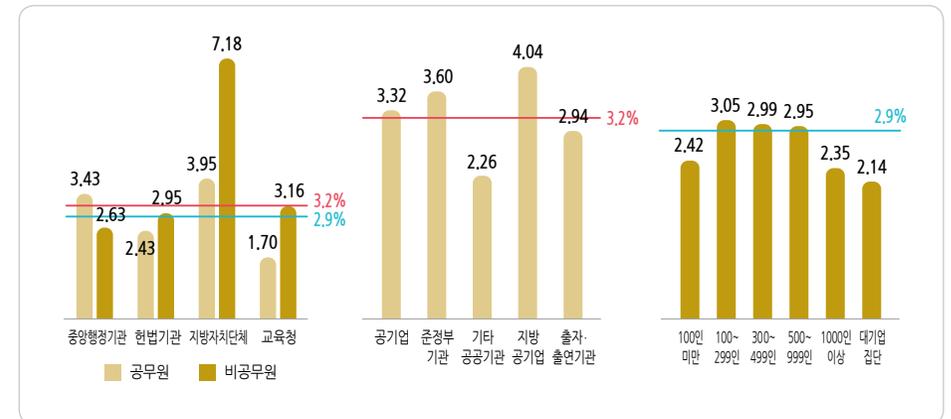


- 주 1: 장애인 고용인원 및 고용률은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를 적용한 결과임(이하 동일)
- 주 2: 고용률 = (장애인 고용인원 / 상시근로자 수) × 100
-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내부자료), 2019

● 정부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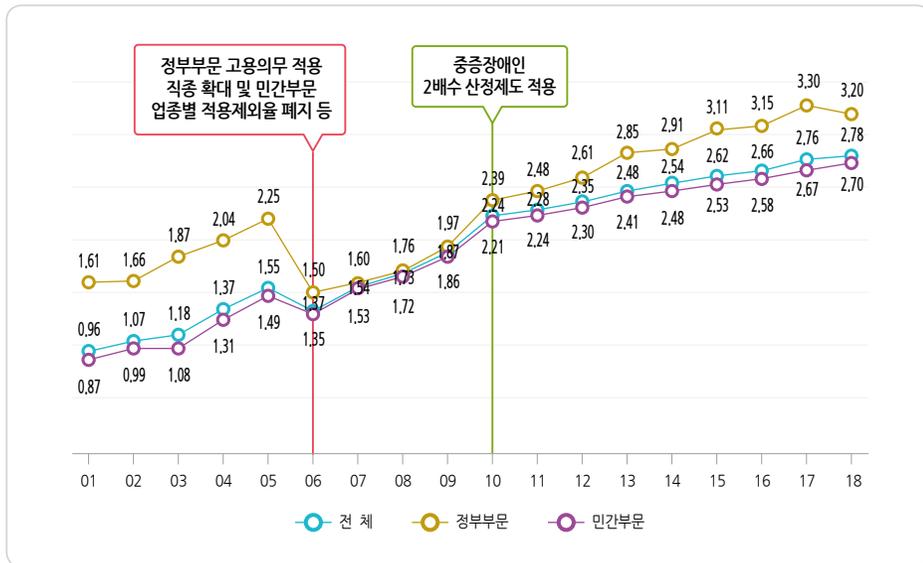
● 민간부문(공공기관(%))

● 민간부문(민간기업(%))



- 주: 2018년 기준 법정 의무고용률은 정부부문 공무원, 공공기관 3.2%, 정부부문 비공무원, 민간기업 2.9%임(가로선 참조)
-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내부자료), 2019

● 장애인 고용률 추이 (%)



· 주 1: '정부부문'은 공무원 및 비공무원을 합산하고, '민간부문'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합산한 수치(이하 동일)
 2: 법정 의무고용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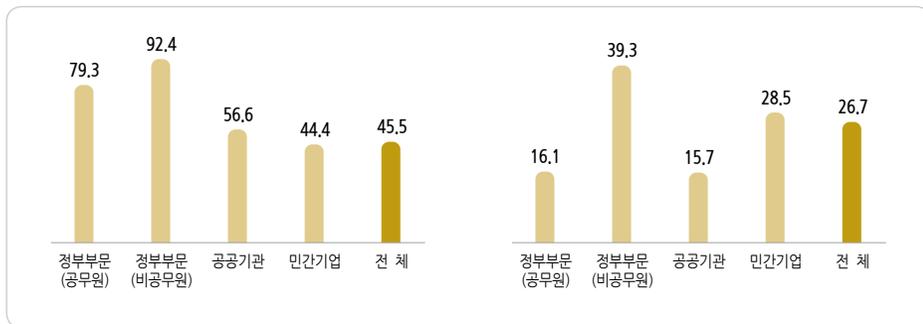
- 민간기업-공공기관-정부: 2.0%(2000~2008) → 민간기업-공공기관: 2.0%, 정부: 3.0%(2009)
- 민간기업-정부(비공무원): 2.3%(2010~2011) → 2.5%(2012~2013) → 2.7%(2014~2016) → 2.9%(2017~2018)
- 정부(공무원)-공공기관: 3.0%(2010~2016) → 3.2%(2017~2018)

·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내부자료), 각 연도

2. 의무고용 이행률 및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2018)

● 의무고용 이행률 현황 (%)

●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 (%)



· 주 1: 의무고용 이행률 = (의무고용 이행 사업체 수 /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수) X 100
 2: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 =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 X 100
 ·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내부자료), 2019

V. 고용서비스 경험 및 욕구

1. 장애인의 고용서비스 욕구(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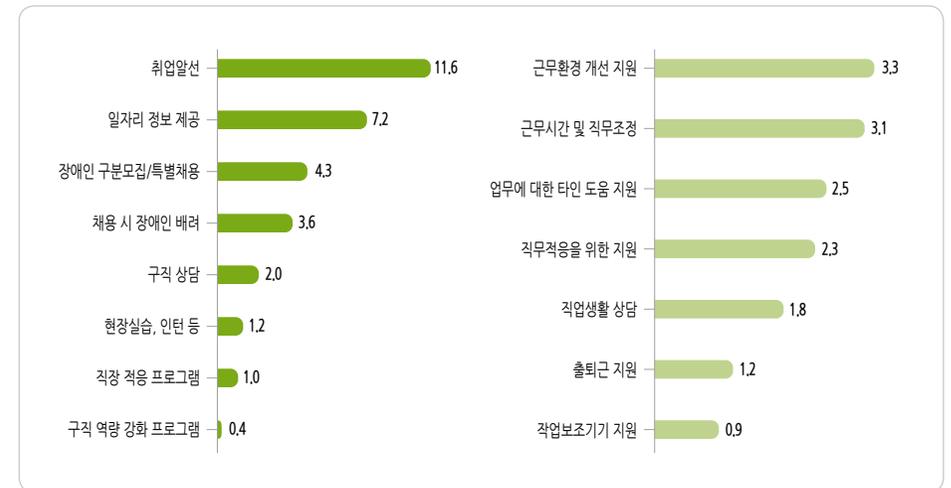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추정수	비율
취업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 장애인 특별채용 등 취업지원	394,796	15.8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근로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168,212	6.7
직업능력개발훈련	76,434	3.1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작업장 근로	125,598	5.0
금전적 지원(임금보조, 세제지원 등)	410,622	16.5
창업 지원(창업컨설팅, 창업정보 제공, 창업자금 융자 등)	59,571	2.4
차별금지, 인식개선 등 고용여건 조성	102,194	4.1
기타	4,005	0.2
특별히 없음	1,579,720	63.3
전체(추정수)	2,495,043	-

· 주: 중복응답 항목
 ·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18

● 필요한 취업 지원사항 (%)

● 필요한 고용유지 지원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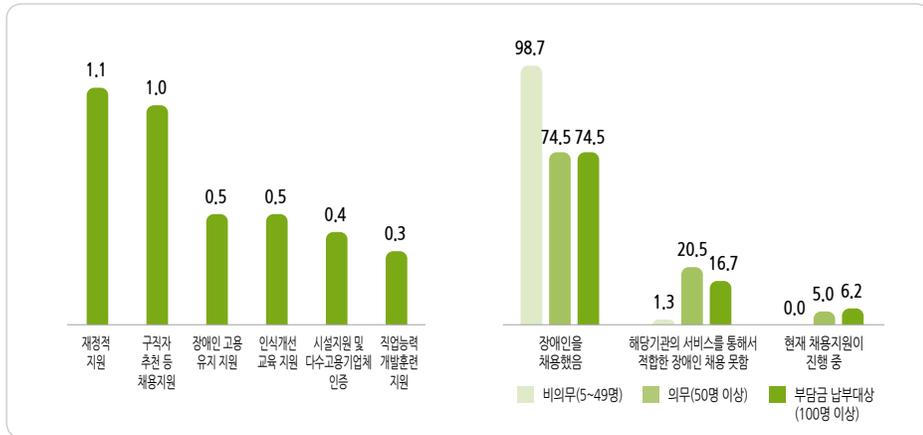


· 주 1: 중복응답 항목
 2: '필요한 취업 지원사항'은 상단 표의 '취업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장애인 특별채용 등 취업지원'에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하였음
 3: '필요한 고용유지 지원사항'은 상단 표의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응답자에게 질문하였음
 4: 두 경우 모두 비율은 전체 장애인구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18

2.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욕구(2017)

● 서비스를 지원받은 경험(%)

● 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채용 효과(%)



- 주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서비스 지원받은 경험 없다'에 (97.9%)에 응답한 항목 제외
- 주 2: 중복응답 문항이므로 합계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주 3: '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채용 효과'는 '구직자 추천 등 채용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응답받았으며, 해당 기업체가 당초 목표한 만큼의 장애인을 채용했는지를 질문
-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2018

● 채용지원에 필요한 지원사항(%)

● 고용유지에 필요한 지원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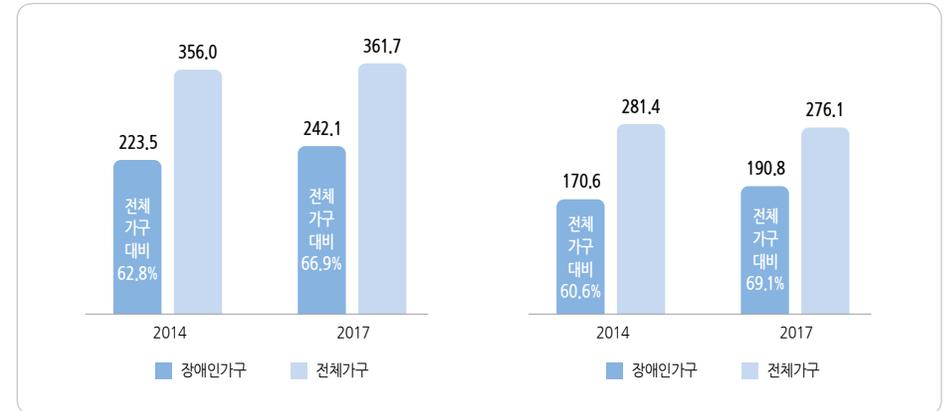
- 주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 중 장애인 채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사항 중복 응답
- 주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 대상으로 기업에 취직한 장애인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사항 중복응답
- 주 3: 중복응답 문항이므로 합계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2018

VI. 영역별 장애인복지 현황

1. 장애인의 경제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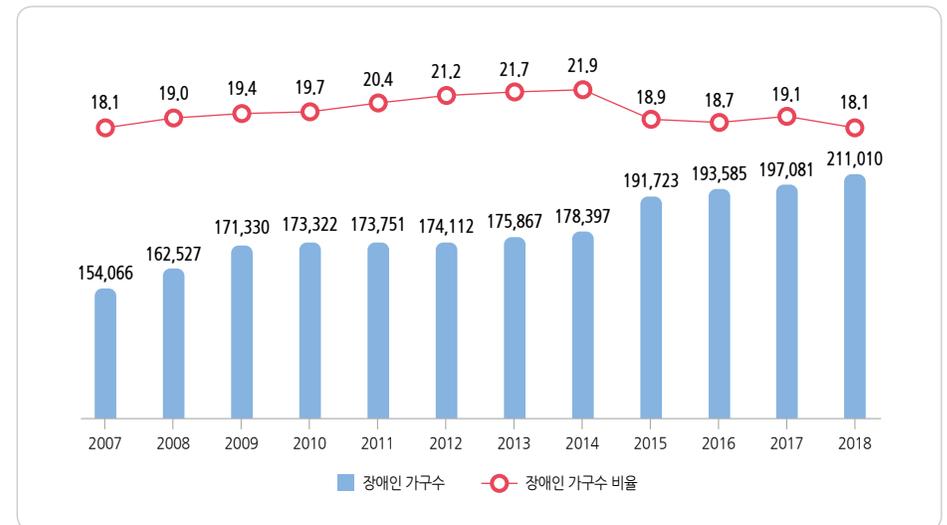
● 가구 월평균 소득액(만원) 2014, 2017

● 가구 월평균 지출액(만원) 2014,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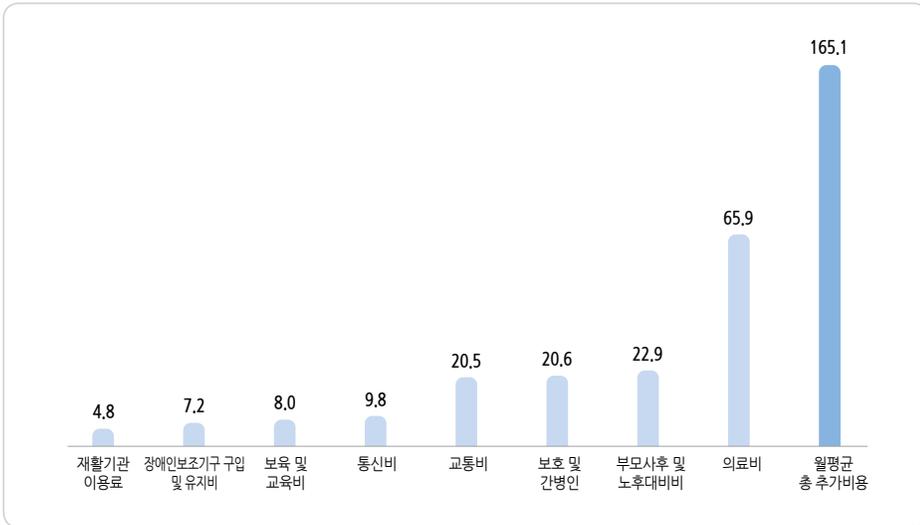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각 연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장애인 가구(%,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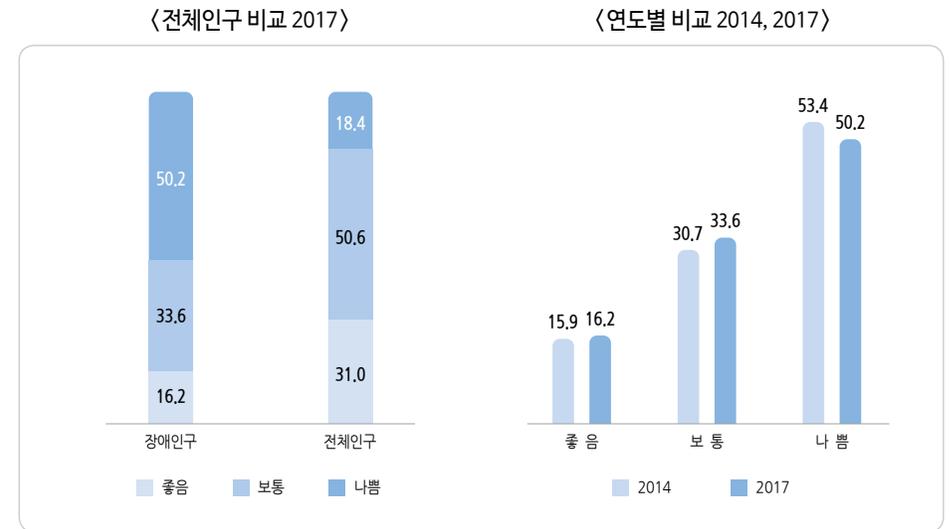
- 주: 장애인가구 비율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장애인가구 수 / 전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수) × 100
-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각 연도

● 장애인가구의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 지출 비용(천원)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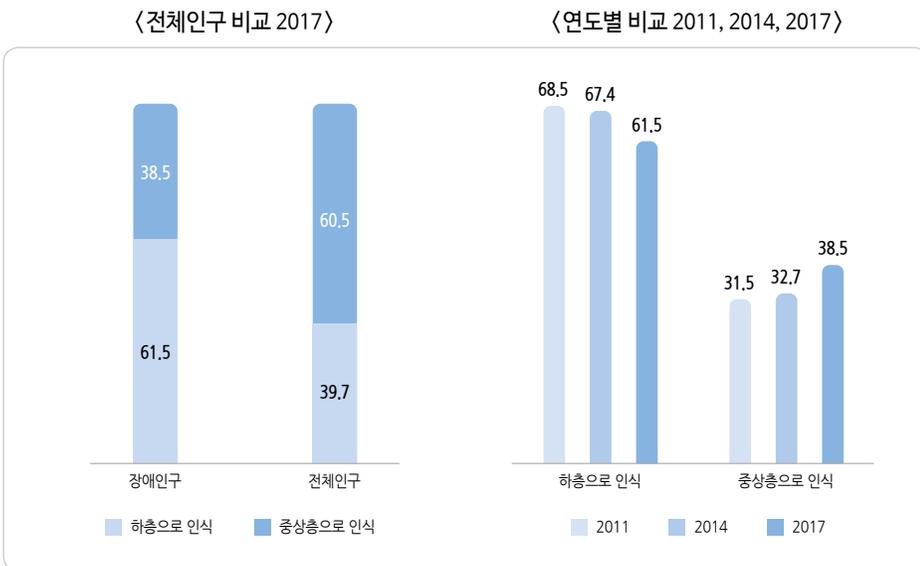
2. 장애인의 보건의료

● 주관적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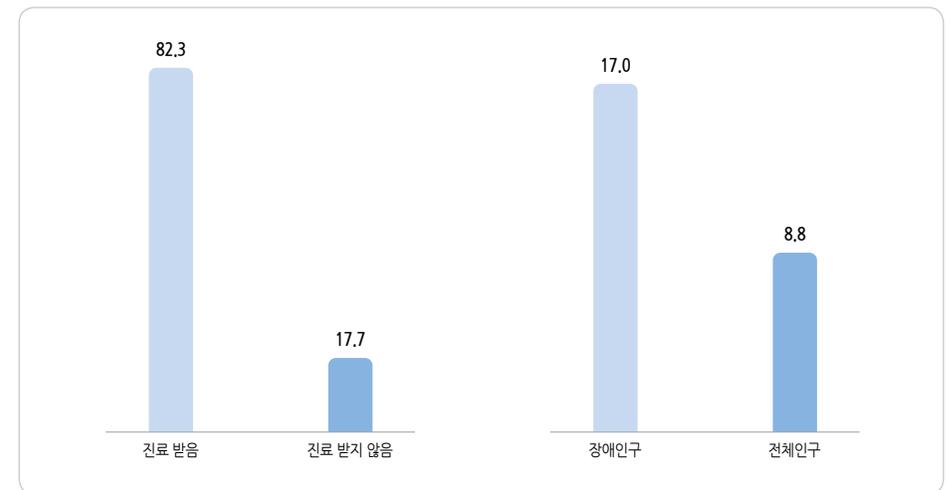
· 주 : 전체인구는 우리나라 19세 이상 일반 국민의 주관적 건강상태임(국민건강통계, 2016)
·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각 연도

● 주관적 경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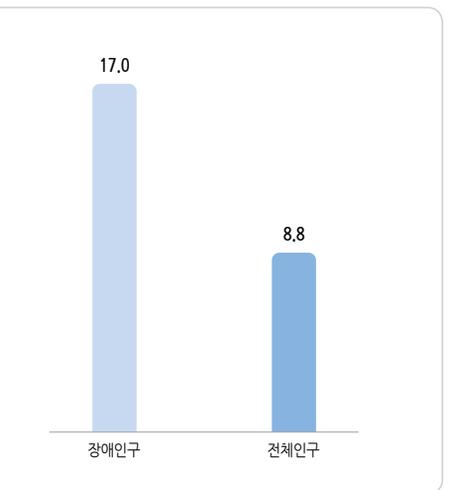
·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2018

● 장애인 정기적 진료 여부(%)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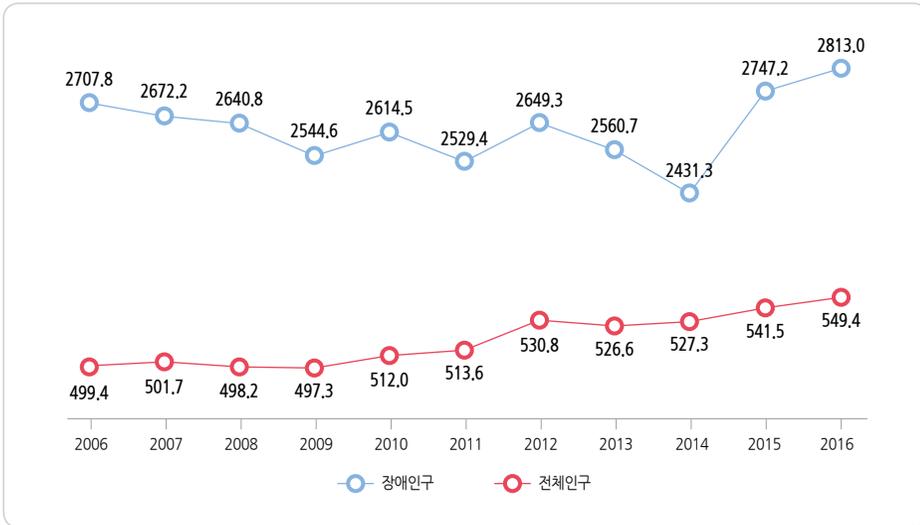


· 주 : '미충족 의료경험률'은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최근 1년 동안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률
·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2018

● 미충족 의료 경험률(%)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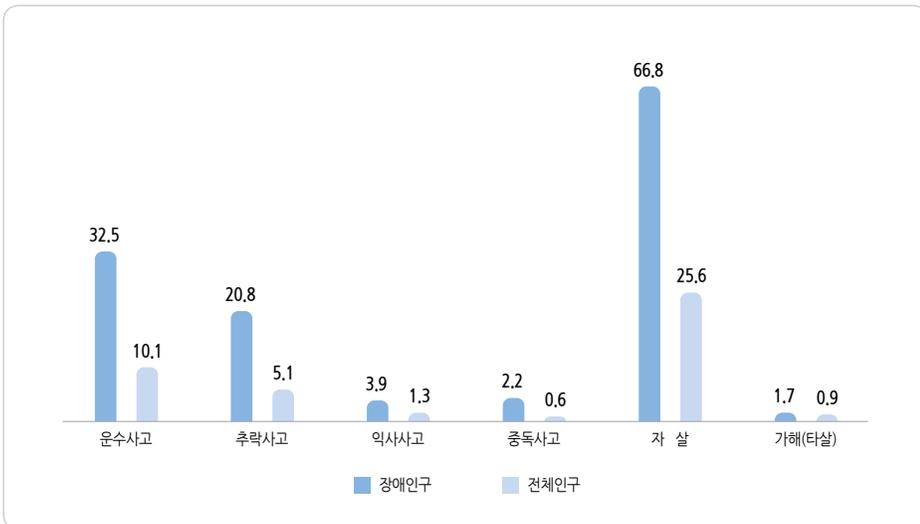


● 장애인 조사망률(10만 명당명) 2016



· 주 : 조사망률 = (1년간 장애인 사망자 수/해당연도 연앙인구) X 100,000
 · 자료 :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2016년도 장애와 건강 통계」, 2018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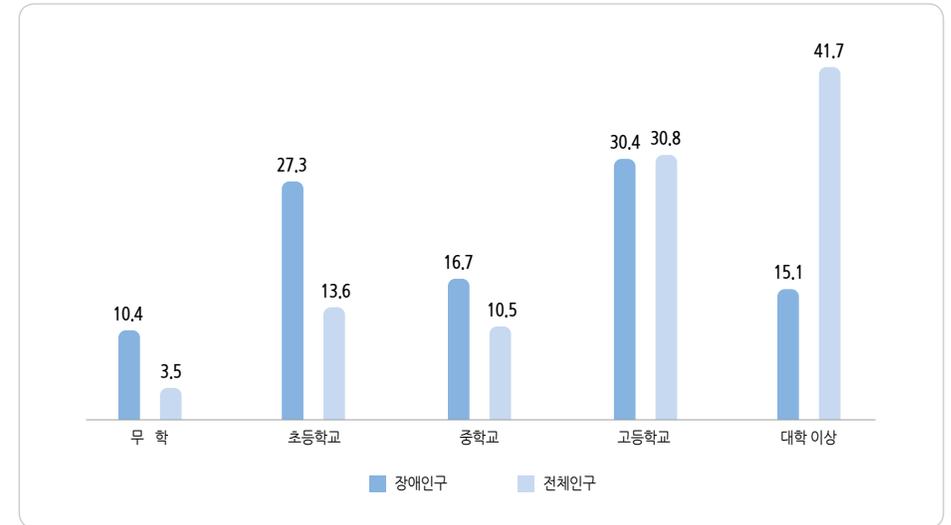
● 사고사로 인한 사망률(10만 명당명) 2016



· 자료 :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2016년도 장애와 건강통계」, 2018 / 통계청, 「2016년 사망원인통계」,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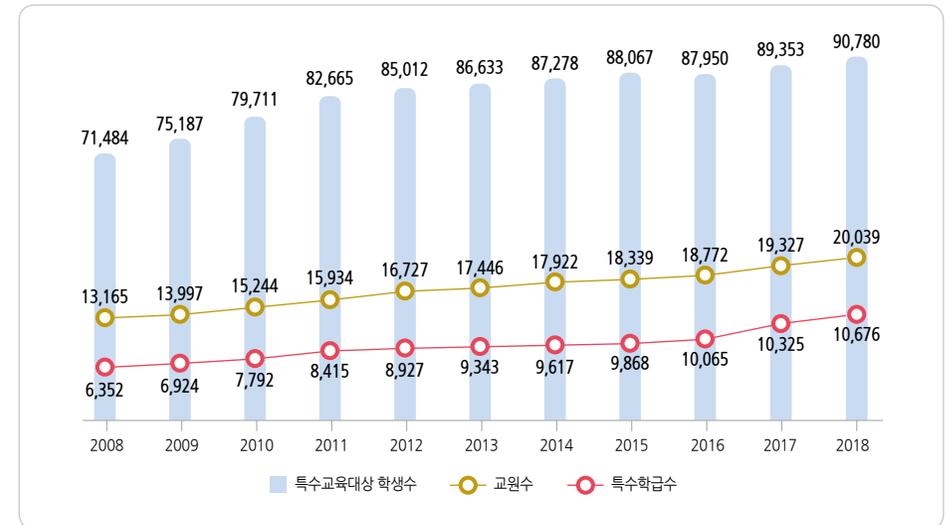
3. 장애인의 교육

● 교육 정도(%)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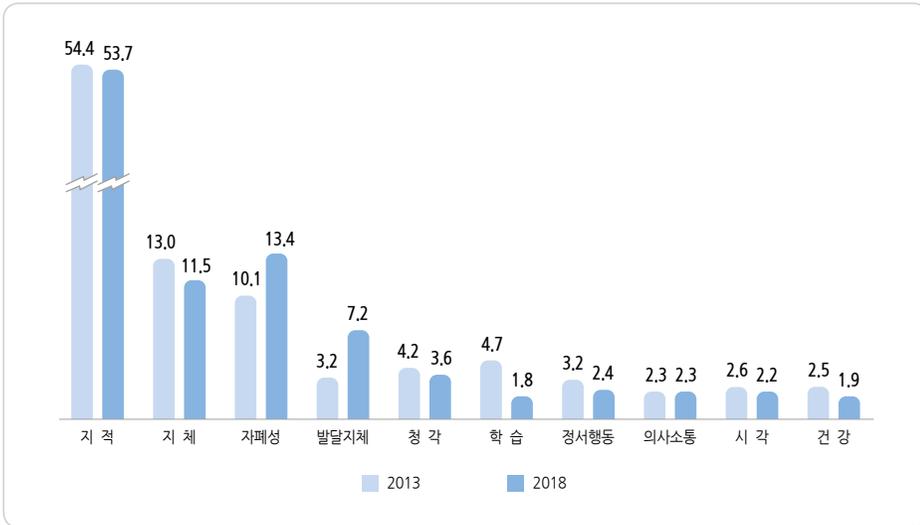
· 주 1 : 6세 이상 대상
 2 : 전체인구는 2015년 자료
 3 : '대학이상'은 대학(3년제 이하)에서 대학원까지 모두 포함
 ·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2018 /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16

● 특수교육 현황(명, 학급)



· 주 :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장애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 자료 :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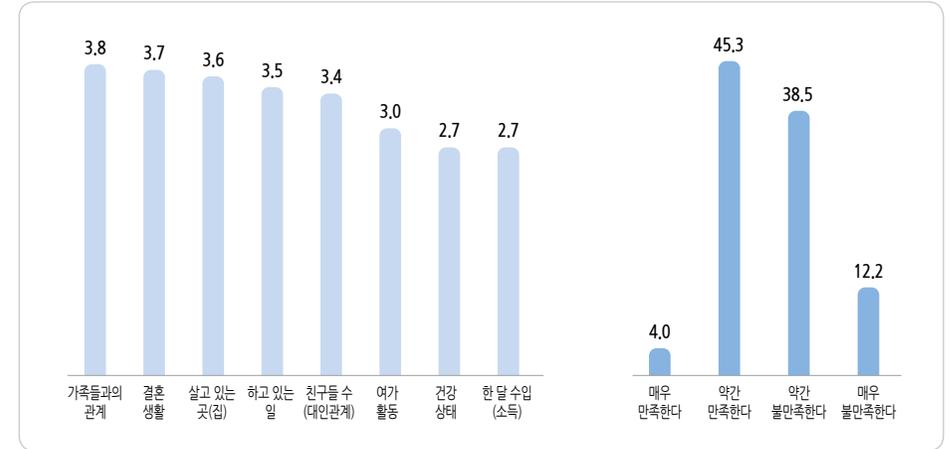
● 특수교육대상 학생 장애유형 비율 (%) 2013,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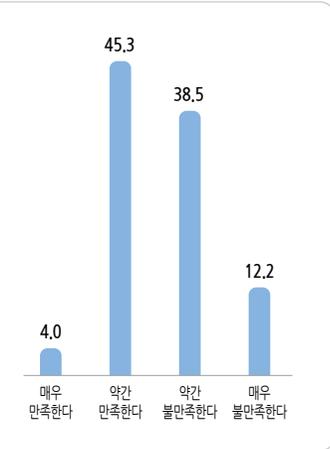
· 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영역별 조사로 일반적인 장애 정의와는 상이
 · 자료 :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각 연도

4. 장애인의 생활 및 여가

● 생활 영역별 만족도 (5점 척도) 2017



●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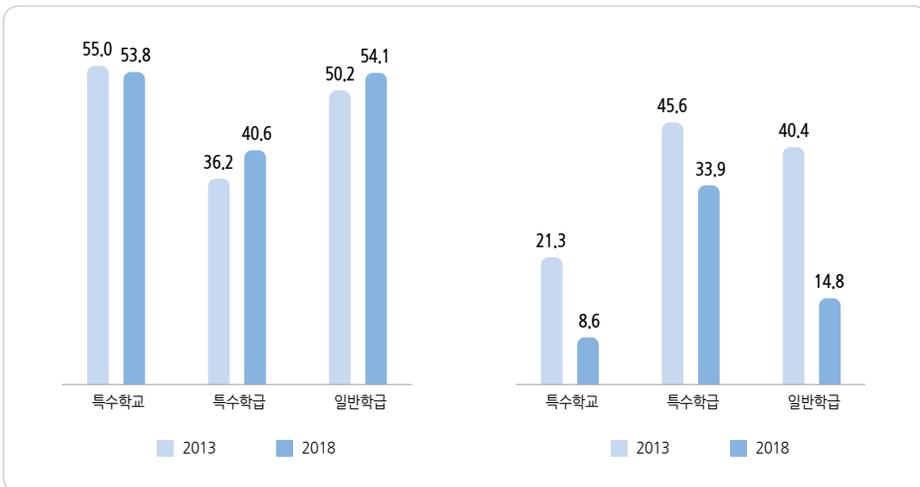


· 주 : '생활 영역별 만족도'는 5점 척도 기준(매우 불만족 = 1, 매우 만족 = 5)
 ·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2018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교 졸업생 진로 현황 비교 (%)

〈진학률 2013, 2018〉

〈취업률 2013,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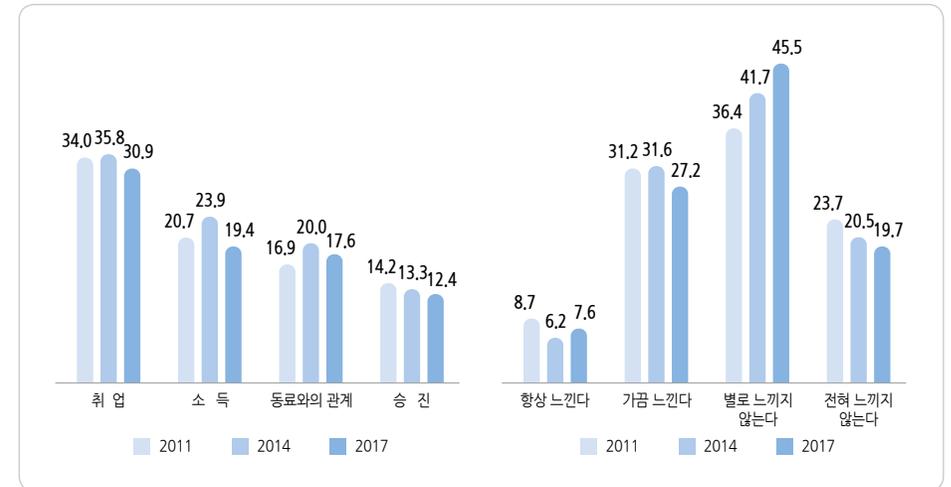


· 자료 :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각 연도

5. 장애인의 차별 경험과 인식

● 장애인의 직장생활에서의 차별 경험률 (%) 2011, 2014,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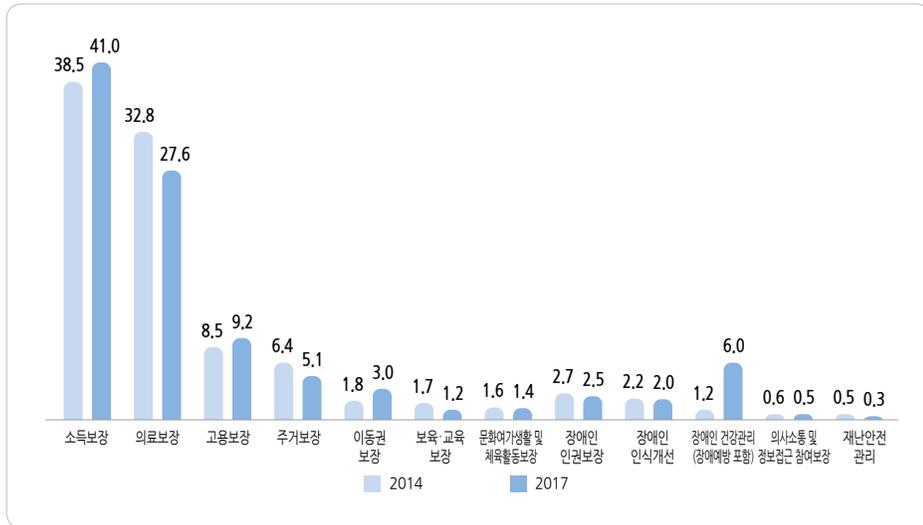
● 장애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 (%) 2011, 2014, 2017



· 주 : '직장생활 차별 경험률'은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에서 직장생활에 관한 부분만 제시
 ·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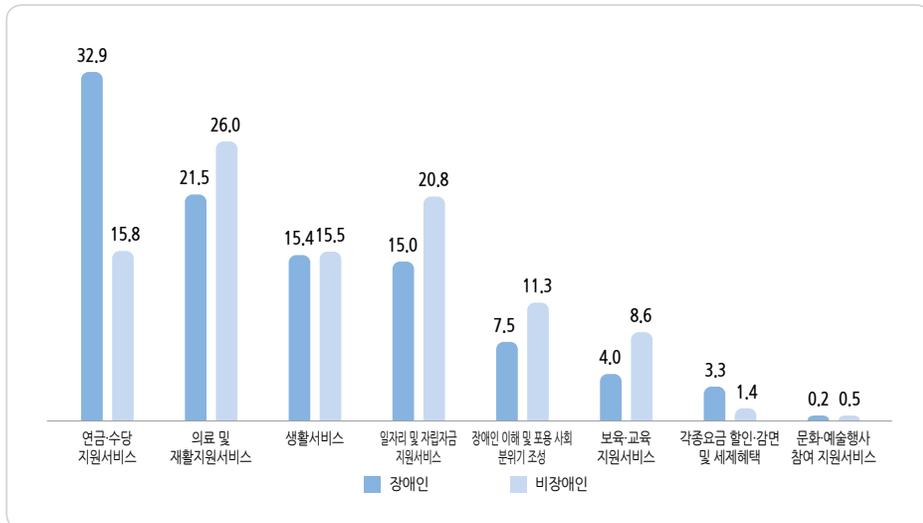
6.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욕구

○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욕구 (%) 2014, 2017



· 주 : 기타 항목 제외
·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각 연도

○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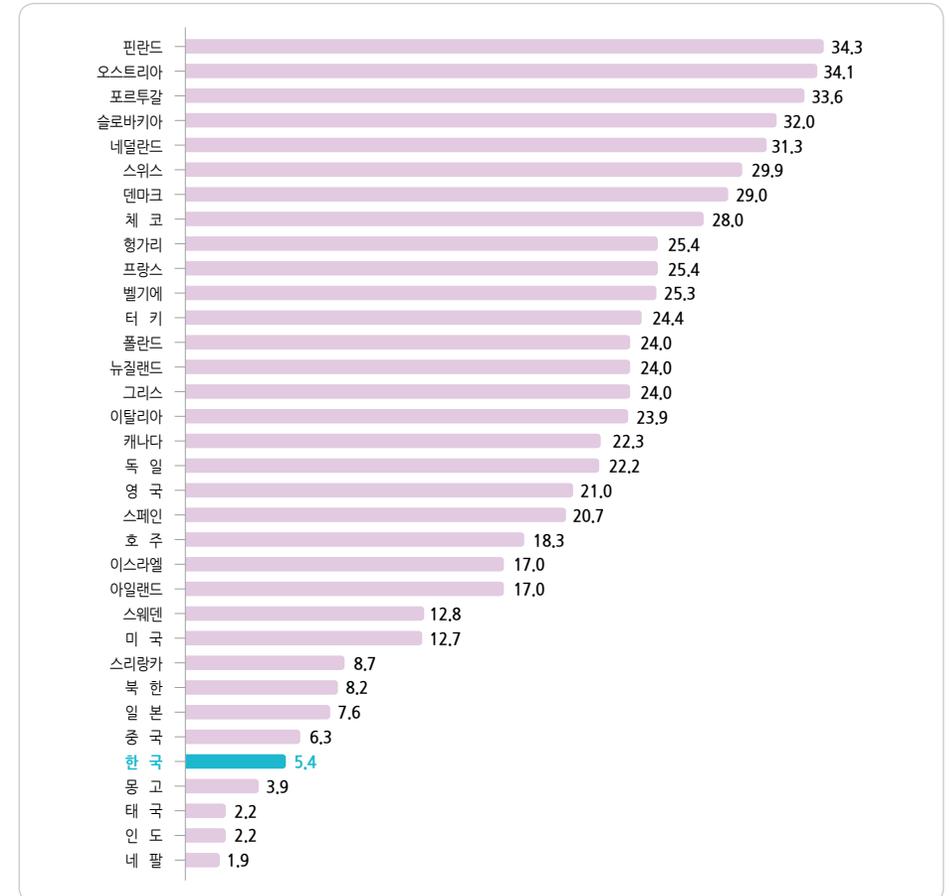


· 주 : 기타 항목 제외
· 자료 : 통계청, 「2017년 사회조사」, 2017

VII. 해외 장애인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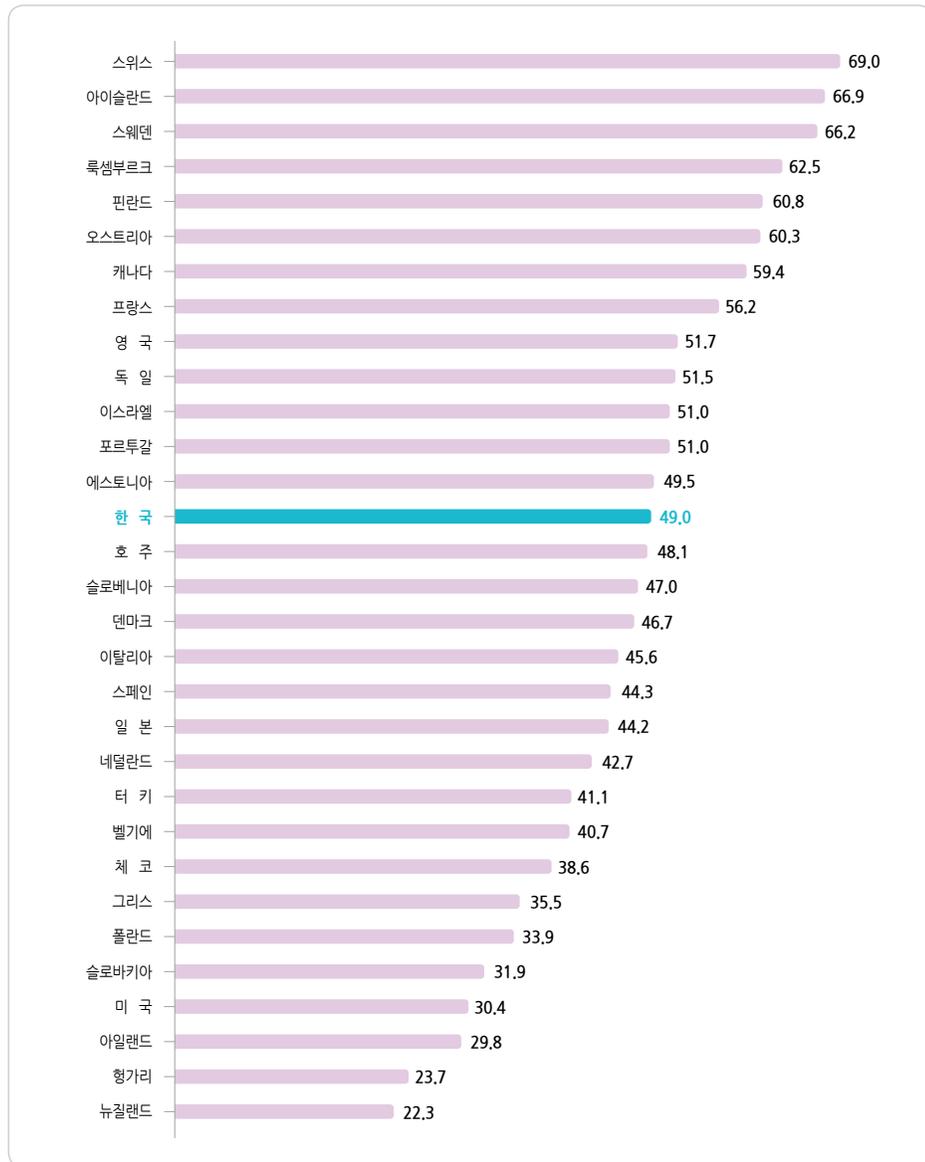
1. 해외 주요국 장애인 관련 현황

○ 장애인 출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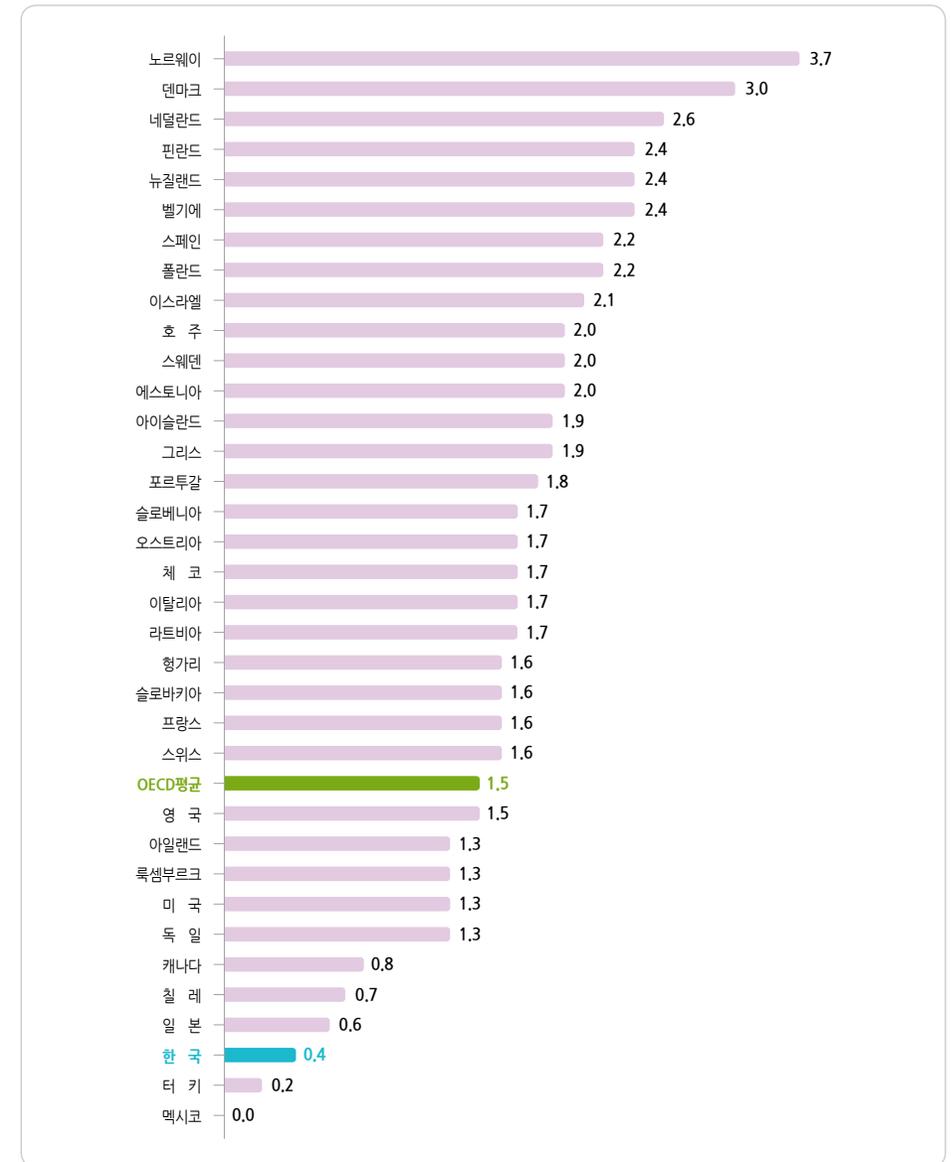
· 주 1 : 캐나다(15세 이상), 영국 외 유럽국가(16세 이상) 인구 대상
· 주 2 : 국가별 비교는 각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 문화적 차이 및 장애 판정의 주관적 요소 등 장애 인정 범위와 연령 등 상세 조건이 상이하므로 일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우며, 각 국가별 인구조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의 및 측정 내용은 '주요 용어 해설' 참조
· 주 3 : 각 국가에서 2013년 이후에 발표한 최신자료를 사용하였음
· 자료 : 한국_「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 일본_「2019년 장애인백서」 / 스리랑카, 북한, 중국, 몽고, 태국, 인도, 네팔_「Disability at a Glance 2015」 / 미국_「2017 American Community Survey」 / 캐나다_「Canadian Survey on Disability 2017」 / 호주_「Disability, Ageing and Carers, Australia: Summary of Findings 2015」 / 뉴질랜드_「Disability Survey 2013」 / 이스라엘_「Facts and Figures」(People with disabilities in Israel in 2018) / 영국 외 유럽국가_「EU-SILC, 2017」(단 핀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덴마크, 체코, 헝가리, 벨기에, 폴란드, 그리스, 스페인, 스웨덴은 2018년 기준) / 영국_「Family Resources Survey: financial year 2017/18」

○ 장애인 고용률(%)



- 주 1 : 뉴질랜드(15세 이상), 영국 외 유럽국가, 호주, 한국(15~64세), 영국, 미국(16~64세), 이스라엘(20~64세), 캐나다(25~64세) 인구 대상
- 2 : 일본은 신체, 지적, 정신 장애인 조사대상자 중 취업한 장애인의 비율임
- 3 : 국가별 통계의 내용, 대상 범위, 생산 및 발표 주기 등이 다르므로 비교 시 유의
- 자료 : 한국_「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일본_「2011 장애인취업실태조사」 / 미국_「Persons with a Disability: Labor Force Characteristics, 2019」 / 캐나다_「Canadian survey on disability 2017」 / 호주_「Disability, Ageing and Carers, Australia: Summary of Findings 2015」 / 뉴질랜드_「Labour Market Statistics 2018 quarterly」 / 유럽국가_「Labour Force Survey, 2011」 / 영국_「People with Disabilities in Employment, 2019」

○ 장애급여 및 상병급여(Disability and Sickness Cash Benefit) 공적 지출(GDP대비 %)



- 주 1 : 2015년 기준. 단 뉴질랜드, 호주, 이스라엘, 미국, 칠레, 한국, 터키, 멕시코는 2016년도, 폴란드는 2014년 기준
- 2 : 선천적 혹은 중도에 얻은 장애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거나 부분적으로만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장애급여)와 산재가 아닌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근로 불능 때문에 소득의 손실을 입게 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상병급여)(OECD 정의)
- 3 : 국가별 통계의 내용, 대상 범위, 생산 및 발표 주기 등이 다르므로 비교 시 유의
- 자료 : OECD_「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Public expenditure on disability and sickness cash benefits, in % GDP」

2. 일본의 장애인 통계

● 장애인구 현황-장애유형별(만명, %)

구 분	장애인 수			비 중
	전 체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신체장애인('16, '15)	436.0	428.7	7.3	45.3
지적장애인('16, '15)	108.2	96.2	12.0	11.2
전 체	외래환자	입원환자		
정신장애인('17)	419.3	389.1	30.2	43.5

- 주 1: 장애 정의 및 설명은 '주요 용어 해설' 참조. 장애 유형에 따라 기준 연도가 상이함에 유의
- 주 2: 정신장애인은 지적장애를 제외한 수로 뇌전증과 알츠하이머환자 수를 더한 수임
- 주 3: 자료가 반올림되어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자료: 내각부, 「장애인백서」, 2019

● 연도별 고용의무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200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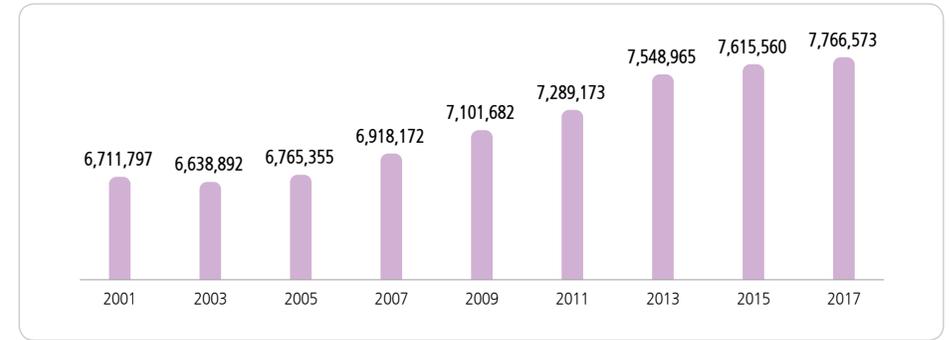
● 2018년 의무고용 현황(개소, 명, %)

구 분	기관 및 기업 수	산정기초가 되는 공무원 및 근로자 수	장애인근로자 수	실고용률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전 체	103,708	28,999,089	597,680	2.06	48,321	46.6
정부부문	2,774	2,461,516	51,900	2.11	1,864	67.2
민간부문	100,934	26,537,573	545,780	2.06	46,457	46.0

- 주 1: '정부부문'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 '민간부문'에는 민간기업, 공공기관이 각각 포함됨
- 주 2: 법정 의무고용률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2.3%, 교육위원회는 2.2%, 민간기업은 2.0%('18년 3월까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2.5%, 교육위원회는 2.4%, 민간기업은 2.2%('18년 4월부터). 자세한 산정 기준은 '주요 용어 해설' 참조
- 자료: 후생노동성, 「2018년 장애인고용현황 집계결과」,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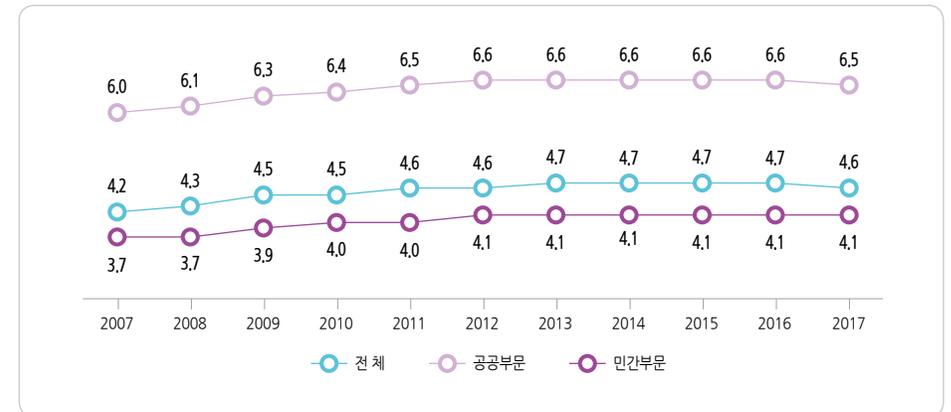
3. 독일의 장애인 통계

● 연도별 중증장애인구 현황(명) 2001~2017



- 주: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또는 심적 건강이 6개월 이상 그 연령에 전형적인 상태와는 차이가 상당하고 사회에서의 생활참여에 지장이 있는 사람('주요 용어 해설' 참조)
- 자료: 연방 통계청, 「중증 장애인 통계」, 각 연도

● 연도별 고용의무 사업체의 중증장애인 고용률(%) 2007~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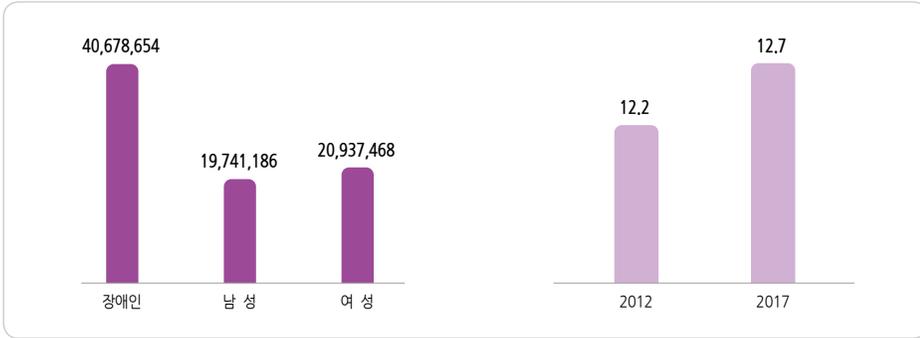
● 2017년 의무고용 현황(명, %)

구 분	고용주	적용대상 근로자 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고용률
전 체	164,631	23,767,089	1,146,111	1,101,131	4.6
정부부문	12,235	5,207,286	260,802	339,209	6.5
민간부문	152,396	18,559,803	885,309	761,922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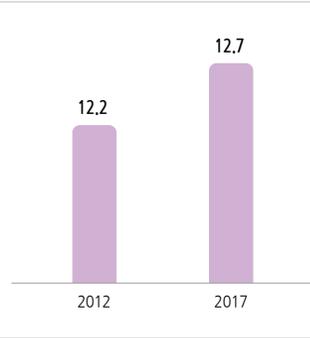
- 주 1: 고용률 =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 적용대상 근로자 수) X 100
- 주 2: 법정 의무고용률은 5% (일부 연방 정부기관은 6%). 자세한 산정 기준은 '주요 용어 해설' 참조
- 자료: 연방노동공단, 「2017년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019

4. 미국의 장애인 통계

● 장애인구 현황(명)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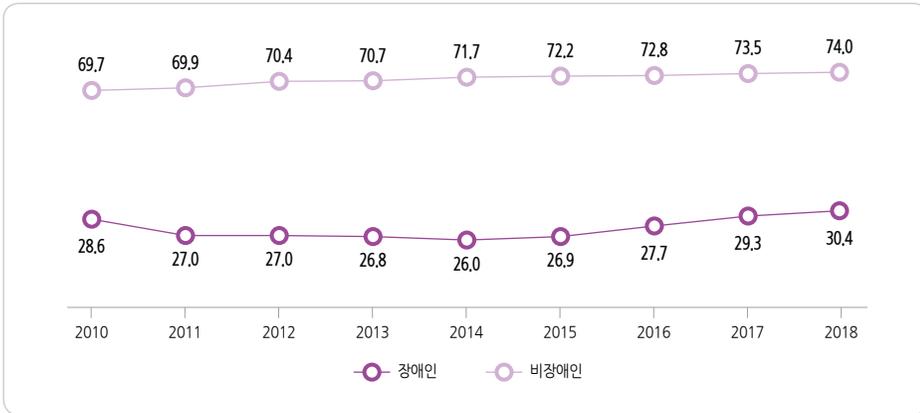


● 장애인구 비율(%) 2012, 2017



· 주 1 : 장애는 청각장애, 시각장애, 인지장애, 보행장애, 자기관리(self-care)장애,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장애를 말하며, 각 수치는 추정치임
 2 : 장애인구 비율 = (장애인구 / 전체인구) X 100
 · 자료 : U.S. 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 각 연도

● 장애인 고용률(%) 2010~2018



· 주 : 16~64세 인구 대상

● 2018년 경제활동상태(천명, %)

구분	16~64세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소계	취업자					실업자
장애인	15,325	5,111	4,666	445	10,215	33.3	8.7	30.4
비장애인	191,182	146,932	141,390	5,542	44,250	76.9	3.8	74.0

· 자료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Persons with a Disability: Labor Force Characteristics-2018」, 2019

주요 용어 해설

1. 등록장애인 현황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동법 제29조에 의하여 시·군 구청에 등록을 한 자
- **장애유형** : 15개 유형으로 구성(간장애, 뇌전증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안면장애, 언어장애, 자폐성장애, 장루·요루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호흡기장애)
-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장애인 관련 법령상의 중증장애인 정의는 서로 상이하여 적용범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기준을 따름)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가구주를 중심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

2.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 **15세 이상 인구** : 조사대상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중 현역군인, 제조사 등을 제외한 인구로, 노동가구 인구로 봄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
- **취업자** : 조사대상기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말함
 -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 **일시휴직자** :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기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전혀 일하지 못한 경우
- **실업자**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함
- **비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육아, 취업준비, 통학, 연로 등으로 구분됨
- **경제활동참가율**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실업률** :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 **고용률**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고용보조지표** :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의 크기'를 의미하며 잠재적 실업자를 고려한 실업률의 개념임

$$\text{고용보조지표 1} = \frac{\text{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text{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text{고용보조지표 2} = \frac{\text{실업자}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text{경제활동인구}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times 100$$

$$\text{고용보조지표 3} = \frac{\text{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text{실업자}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text{경제활동인구}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①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취업자 중에서 실제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한 자
- ② 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의 합계
 - 잠재취업가능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

- 잠재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

- **임금근로자**: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 봉급, 일당, 현물 등을 받는 근로자
 - **상용근로자**: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 설정기간이 1년 이상, 고용계약 미설자 중 소정의 채용 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
 - **임시근로자**: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 설정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고용계약 미설정자 중 일정한 사업(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
 - **일용근로자**: 임금근로자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자기가 직접 사업체를 경영하는 개인기업의 경영주나 또는 자기 혼자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동일가구 내 자기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무보수로 18시간 일하고 있는 사람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기 책임하의 독립적인 형태로 일이 수행되며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일을 하는 자로,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자
 - **무급가족종사자**: 자기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정상근로시간의 1/3 이상) 일한 사람

3. 기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 **기업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의무사업주 단위의 기업(enterprise)을 의미
- **상시근로자**: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포함)인 근로자를 의미함
- **고용의무 기업체**: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29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
- **부담금 납부 대상**: 고용의무 기업체 중 월 평균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4.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민간 사업주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고용의무인원(명)** = 적용대상인원(명) × 의무고용률
-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수(명) / 적용대상인원(명)) × 100

5. 고용서비스 경험 및 욕구

- **고용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관할 사회복지재단이 취업알선, 직업상담, 보장구 지원, 창업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의 전반적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
- **고용서비스 종류**: 구직(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직업훈련), 직업적응훈련, 직업재활훈련, 진로 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탐색, 취업정보제공, 취업 후 지도 등

6. 영역별 장애인복지 현황

- **가구 월평균 소득**: 기본급, 상여금, 사업소득, 축산·어업·농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자, 보험수령액, 연금, 증권수익, 임대료, 정기적으로 받는 각종 보조금 등 가구원 전원이 3개월간 버는 수입을 모두 합한 월평균 금액으로 월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 연간 총소득을 합산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 계산
- **가구 월평균 지출**: 식료품비(주부식비), 연료비, 교육비, 의료비, 문화생활비, 피복비, 교통·통신비, 공과금, 내구재구입 등 가구원 전원이 한 달 쓰는 돈을 모두 합산한 금액

- **장애인가구**: 장애인이 1명 또는 그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함
-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 장애인이 아닌 경우 지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출하는 비용
- **조사망률**: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연간의 총사망자 수를 해당연도의 연안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분비로 나타낸 비율(10만 명 당 사망자 수)
-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함
 - **특수학교**: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응용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 **전공과**: 특수학교의 고등부 과정을 졸업한 학생에게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설치한 1년 이상의 교육과정
- **특수교육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특수교육 담당교직원의 인건비, 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연수비, 기타 특수교육에 투자하는 예산

7. 해외 장애인 통계

▶ 장애인 출현율 및 고용률

- **출현율**: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전연령) / 캐나다(15세 이상) / 유럽국가, 미국(16세 이상)
- **고용률**: 뉴질랜드(15세 이상), 유럽국가, 호주, 한국(15~64세) / 미국(16~64세), 이스라엘(20~64세), 캐나다(25~64세) 인구 대상 산출
- **장애기준**: 유럽국가(No basic activity difficulty의 기준인 이동, 걷기, 보기, 듣기, 기억 및 집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미국(청각, 시각, 인지, 보행, 자기관리, 자립생활 장애) / 캐나다(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수준의 특별한 제약이 있는 사람) / 호주(활동의 어려움 또는 보조기구 필요 여부, 도움 필요여부 등 핵심적인 활동제약이 있는 사람) / 뉴질랜드(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기준에 따라 판정된 장애인 / 이스라엘(건강상 문제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

▶ 일본

- **신체장애인**: (중증) 신체장애인 수첩 1, 2급, (경증) 신체장애인 수첩 3~6급인 자
- **지적장애인**: (중증) 요육(療育)수첩 등의 장애정도가 A1, A2, 1, 2급, (경증) 요육수첩 등의 장애정도가 B1, B2, C, 3, 4급
- **정신장애인**: 기질성정신장애(노년기의 치매), 중독성정신장애(알코올 의존증), 기능성정신장애(정신분열증, 우울증), 반응성정신장애(정신분열증, 우울증, 뇌전증 등이 포함: 1~3급)
- **고용의무 제도**
 - 의무고용률

구 분	'13년 4월~'18년 3월		'18년 4월부터	
	근로자 수	의무고용률	근로자 수	의무고용률
민간기업	50명 이상	2.0%	45.5명 이상	2.2%
공공기관(특수법인,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법인 등)	43.5명 이상	2.3%	43.5명 이상	2.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43.5명 이상	2.3%	43.5명 이상	2.5%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	45.5명 이상	2.2%	45.5명 이상	2.4%

- **근로자 수 산정**: 산정 기준인 상용근로자는 (1) 고용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 기간 제한이 있지만 1년 이상 고용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1년 이상 고용될 전망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어떤

경우에도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이어야 함. 단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에 '단시간 이외 상용근로자'로서 1인으로 산정하고,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1인당 0.5명으로 산정함. 장애인이 취업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한 비율(제외율)만큼 산정 기준 근로자 수가 줄어들. 장애인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서 중증 신체·지적장애인은 2인으로, 신체·지적·정신장애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함

▶ **독 일**

- **장애가 있는 사람** :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또는 심적 건강이 6개월 이상 그 연령에 전형적인 상태와는 차이가 상당하고 사회에서의 생활참여에 지장이 있는 사람
- **장애판정 기준** : '원호의료 시행령' (Versorgungsmedizin-Verordnung)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장애의 의학적 판정을 위한 기준'). 세부 장애 영역별로 장애정도(Grad der Behinderung : GdB)에 따라 10부터 100까지 10단위로 나뉨
 - **중증장애인 (Schwerbehinderte Menschen)** : 장애정도가 50 이상인 장애인으로서 부양사무소 (Versorgungsamt)의 인정을 받은 사람 (주로 의학적 판단)
 -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가 30 이상 50 미만인 장애인 중에서 장애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중증장애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사무소 (Agentur für Arbeit)의 인정을 받은 사람 (의학적 판단 + 직업재활적 접근)
- **고용의무 제도**
 - 2000년까지는 16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민간 및 공공부문의 고용주는 상시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6% 이상 고용해야 했음
 - 2001년부터 법정 의무고용률을 인하여 일부 연방 정부기관 (6%)을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들에게 5% 이상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사회법전 제9권」에 따라 고용주가 중증장애인에게 훈련자리를 제공할 경우 1인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며 특히 중증장애를 가진 청소년에게 훈련자리를 제공할 경우 중증장애인 2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함
- **연방노동공단 (Bundesagentur für Arbeit)** : 직업상담, 직업알선, 직업훈련 촉진, 고용 창출, 실업수당 및 실업부조 등 고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장애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미 국**

- **취업인구 (Employed persons)**
 - 조사기간동안 유급노동자, 자기경영자 또는 15시간 이상 가족과 관련된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한 경우
 - 직업은 있으나, 일을 하지 않는 경우나 질병, 자연재해, 휴가, 양육 문제, 노동분쟁, 모성/부성 휴가 또는 다른 가족 문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인 경우 (쉬는 동안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는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업을 찾는 지에 대해서는 불문함) 각각 한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명의 취업인구로 계산됨. 집안일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 (집안일, 페인트칠, 수선 그 외), 종교와 관련된 자원 봉사활동, 자선활동 등 이와 비슷한 기관에서의 활동의 경우는 제외함
- **실업인구 (Unemployed persons)**
 - 조사기간 동안 일을 가지지 않으며
 - 일시적인 질환을 제외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하며
 - 조사기간으로부터 4주 동안 면접을 보는 것과 같이 구직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의 사람을 뜻함. 임시대기자의 경우에는 실업인구로 분류
- **경제활동인구 (Civilian labor force)** : 취업중이거나, 실업중인 사람 모두를 뜻함
- **실업률 (Unemployment rate)** :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인구의 비율
- **경제활동참가율 (Participation rate)** : 전체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비율
- **고용률 (Employment-population ratio)** : 전체인구 중 취업인구 비율
- **비경제활동인구 (Not in the labor force)** : 취업이나 실업상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장애인 고용통계 3종 소개

구 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	기업체장애인 고용실태조사
조사 주체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사 목적	경제활동상태 관련 규모 파악	노동시장에서의 이동 및 변화추이 분석	기업의 고용실태 및 정책수요 파악
조사 표본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1,000명	2016년 5월 15일 기준 만 15~64세 등록장애인 4,577명	상시 1인 이상 기업체 표본조사 (기본조사: 30,000여개, 심층조사: 6,000여개)
조사 방법	CAPI를 활용한 타계식 면접조사	TAPI를 활용한 타계식 면접조사	기본조사: 전화조사 심층조사: CAPI를 활용한 타계식 면접조사
조사 연혁	2010년: 1회 시범 실시 2013년 이후: 매년 실시	1차웨이브 패널조사 (2008~2015년) : 매년 실시 2차웨이브 패널조사 (2016년 이후) : 매년 실시	2008년 이후: 격년 실시 2019년 이후: 매년 실시
조사주기	1년(최근조사: 2018년)	1년(최근조사: 2018년)	1년(최근조사: 2018년)
조사기간	7주	3개월	3개월
주요 조사내용	인적사항, 장애정보, 경제활동상태판별,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특성, 고용서비스 욕구, 가구정보 등	인적특성, 장애특성, 경제활동상태판별, 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미취업자, 취업을 위한 노력과 지원, 직업적 능력, 취업 태도 및 환경, 일상생활과 삶의 질, 가구 일반사항 등	기업체 개요, 근로자 현황, 기업체 모집과 채용, 업무특성 및 노무관리, 업무환경, 교육훈련, 장애인 고용에 대한 만족도, 고용서비스 이용 및 욕구, 장애인 고용 인식, 장애인 채용 경험과 미채용, 채용계획, 재무정보 등
결과 활용	고용률, 실업률 등의 경제활동 지표 산출	장애인 경제활동 이동과정 및 내재요인 도출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규모 추경, 고용실태 및 고용요인 도출

구 분

이용 시기 및 내용



장애인고용패널조사

- * 익년 6월 보고서 및 데이터 무상 배포
- * 장애인의 경제활동관련 동태적 통계자료 생산
- * 장애인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 매년 12월 보고서 배포 및 데이터 무상 배포
- * 장애인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 조사
- * 장애인 정책대상 집단의 규모 및 실태 파악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 * 2018년부터 매년 12월 보고서 및 데이터 무상 배포
- *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관련 규모 추정과 고용실태, 고용요인, 서비스 욕구 파악



EDI 장애인 통계

- * 매년 12월 통계집 배포
- * 국내외 장애인 관련 최신 통계자료 수록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 * 2019. 11. 8.(금) 12:30~17:30 대한상공회의소
- * 기획주제 : 장애인 고용정책의 성과와 미래전략